

PART 03

제3편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INCOTERMS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03

PART

2024

무역영어 2권

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

1. The purpose of the text of this Introduction® is fourfold:

- to explain what the Incoterms® 2020 rules do and do NOT do and how they are best incorporated;
- to set out the important fundamentals of the Incoterms® rules: the bas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eller and buyer, delivery, ris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terms® rules and the contracts surrounding a typical contract of sale for export/import and also, where appropriate, for domestic sales;
- to explain how best to choose the right Incoterms® rule for the particular sale contract; and
- to set out the central chang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Incoterms® 2020.

2. The Introduction follows this structure:

- I. What the Incoterms® rules do
- II. 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
- III. How best to incorporate the Incoterms® rules
- IV. Delivery, risk and cost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 V. Incoterms® 2020 rules and the carrier
- VI. Rules for the contract of sale and their relationship to other contracts
- VII. The eleven Incoterms® 2020 rules—“sea and inland waterway” and “any mode(s) of transport”: getting it right
- VIII. Order within the Incoterms® 2020 rules
- IX.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Incoterms® 2020
- X. Caution with variants of Incoterms® rules.

3. This Introduction gives guidance on the use of, and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s behind, the Incoterms® 2020 rules.

인코텀즈 2020 소개문

1. 본 소개문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인코텀즈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코텀즈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 다음과 같은 인코텀즈규칙의 중요한 기초들을 기술하는 것: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인코텀즈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사이의 관계
- 어떻게 당해 매매계약에 올바른 인코텀즈규칙을 가장 잘 선택할지를 설명하는 것
-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변경사항들을 기술하는 것.

2. 본 소개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I. 인코텀즈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 II. 인코텀즈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가
- III. 어떻게 인코텀즈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가
- IV. 인코텀즈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
- V. 인코텀즈 2020 규칙과 운송인
- VI. 매매계약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 VII. 11개 인코텀즈 2020 규칙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올바른 사용법
- VIII. 인코텀즈 2020 규칙 내 조항의 순서
- IX.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 X. 인코텀즈규칙 변용시 유의점

3. 본 소개문은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사용과 그 기본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2021, 2023 기출

4. The Incoterms® rules explain a set of eleven of the most commonly-used three-letter trade terms, e.g. CIF, DAP, etc., reflecting business-to-business practice in contracts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5. The Incoterms® rules describe:
 - Obligations: Who does what as between seller and buyer, e.g. who organises carriage or insurance of the goods or who obtains shipping documents and export or import licences;
 - Risk: Where and when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in other words wher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and
 - Costs: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which costs, for example transport, packaging, loading or unloading costs, and checking or security-related costs.The Incoterms® rules cover these areas in a set of ten articles, numbered A1/B1 etc., the A articles representing the seller’s obligations and the B articles representing the buyer’s obligations. See paragraph 53 below.

4. 인코텀즈규칙은 예컨대 CIF, DAP 등과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고 물품매매계약상 기업간 거래관행(business-to-business practice)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조건(trade term)을 설명한다.

5. 인코텀즈규칙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즉 누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을 마련하는지 또는 누가 선적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취득하는지
- ▶ 위험: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 하는지, 다시 말해 위험은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 ▶ 비용: 예컨대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또는 양하비용 및 점검 또는 보안관련 비용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인코텀즈규칙은 A1/B1 등의 번호가 붙은 일련의 10개의 조항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다루는데, 여기서 A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를, 그리고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지칭한다. 아래 53번 단락을 보라.

■ 2021, 2023 기출

6. The Incoterms® rules are NOT in themselves-and are therefore no substitute for-a contract of sale. They are devised to reflect trade practice for no particular type of goods-and for any. They can be used as much for the trading of a bulk cargo of iron ore as for five containers of electronic equipment or ten pallets of airfreighted fresh flowers.
7. The Incoterms® rules do NOT deal with the following matters:
 - 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at all;
 - th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sold;
 - the time, place, method or currency of payment of the price;
 - the remedies which can be sought for breach of the contract of sale;
 - most consequences of delay and other breaches in the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 the effect of sanctions;
 - the imposition of tariffs;
 - export or import prohibitions;
 - force majeure or hardship;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 the method, venue, or law of dispute resolution in case of such breach.

Perhaps most importantly,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eal with the transfer of property/title/ownership of the goods sold.
8. These are matters for which the parties need to make specific provision in their contract of sale. Failure to do so is likely to cause problems later if disputes arise about performance and breach. In essence, the Incoterms® 2020 rules are not themselves a contract of sale: they only become part of that contract when they are incorporated into a contract which already exists. Neither do the Incoterms® rules provide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There may be legal regimes which apply to the contract, whether international, like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r domestic mandatory law relating, for example, to health and safety or the environment.

6. 인코텀즈규칙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인코텀즈 규칙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품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품에 관한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인코텀즈규칙은 산적화물(散積貨物, bulk cargo) 형태의 철광석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고 5개의 전자장비 컨테이너 또는 항공운송되는 10개의 생화 팔레트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7. 인코텀즈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존부
 - 매매물품의 성상(性狀)
 -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 제재의 효력
 - 관세부과
 -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 지식재산권 또는
 - 의무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코텀즈규칙은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8. 위와 같은 사항들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컨대 인코텀즈 2020 규칙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니다. 즉 인코텀즈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되는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인코텀즈규칙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정하지도 않는다.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체계(legal regimes)가 있으며, 이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같은 국제적인 것이거나 예컨대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관한 국내의 강행법률일 수 있다.

9. If parties want the Incoterms® 2020 rules to apply to their contract, the safest way to ensure this is to make that intention clear in their contract, through words such as
"[the chosen Incoterms® rule] [named port, place or point] Incoterms® 2020".
10. Thus, for example, CIF Shanghai Incoterms® 2020, or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11. Leaving the year out could cause problems that may be difficult to resolve. The parties, a judge or an arbitrator need to be able to determine which version of the Incoterms® rules applies to the contract.
12. The place named next to the chosen Incoterms® rule is even more important:
 - ▶ in all Incoterms® rules except the C rules, the named place indicates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i.e. wher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 ▶ in the D rules,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of delivery and als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the seller must organise carriage to that point;
 - ▶ in the C rules, the named place indicates the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organise and pay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which is not, however,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13. Thus, an FOB sale raising doubt about the port of shipment leaves both parties uncertain as to where the buyer must present the ship to the seller for the shipment and the transport of the goods-and as to wher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board so as to transfer risk in the goods from seller to buyer. Again, a CPT contract with an unclear named destination will leave both parties in doubt as to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and pay for the transport of the goods.
14. It is best to avoid these types of issues by being as geographically specific as possible in naming the port, place or point, as the case may be, in the chosen Incoterms® rule.
15. When incorporating a particular Incoterms® 2020 rule into a sale contract, it is not necessary to use the trademark symbol. For further guidance on trademark and copyright, please refer to <https://iccwbo.org/incoterms-copyright/>.

9. 당사자들이 인코텀즈 2020 규칙이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하여 그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 (“[선택된 인코텀즈규칙] [지정항구, 장소 또는 지점] Incoterms 2020”)**
10. 따라서 예컨대, CIF Shanghai Incoterms® 2020, 또는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11. 연도를 빠트리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판사 또는 중재인이 어떤 버전의 인코텀즈규칙이 계약에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 선택된 인코텀즈규칙 바로 다음에 기명되는 장소는 더 중요하다.
- C 규칙을 제외한 모든 인코텀즈규칙에서 그러한 지정장소는 물품이 어디서 “인도” 되는 지, 즉 위험이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를 표시한다.
 - D 규칙에서 지정장소는 인도장소이자 목적지이고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 C 규칙에서 지정장소는 매도인이 그 운송을 마련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 물품운송의 목적지이지만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아니다.
13. 따라서 선적항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하는 FOB 매매는 매수인이 물품의 선적과 운송을 위하여 어디서 매도인에게 선박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또한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서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양당사자에게 불확실한 점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지정목적지가 불명확한 CPT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물품운송계약의 목적지점에 관하여 양당사자에게 의문을 남긴다.
14.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선택된 인코텀즈규칙에서 해당되는 항구나 장소 또는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15. 특정한 인코텀즈 2020 규칙을 매매계약에 편입할 때, 상표표지(trademark symbol)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다. 상표와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https://iccwbo.org/incoterms-copyright/>>를 참조하라.

Chapter
IV

DELIVERY, RISK AND COST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제4장 인코텀즈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

16. A named place or port attached to the three letters, e.g. CIP Las Vegas or CIF Los Angeles, then, is critical in the workings of the Incoterms® 2020 rules. Depending on which Incoterms® 2020 rule is chosen, that place will identify either the place or port at which the good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deliver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the place of “delivery”, or the place or port to which the seller must organise the carriage of the goods, i.e. their destination; or, in the case of the D rules, both.
17. In all Incoterms® 2020 rules, A2 will define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 and that place or port is closest to the seller in EXW and FCA (seller's premises) and closest to the buyer in DAP, DPU and DDP.
18.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identified by A2 is critical both for risk and for costs.
19.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under A2 marks the place at which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under A3. It is at that place or port that the seller performs its obligation to provide the goods under the contract as reflected in A1 such that the buyer cannot recover against the seller for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ccurring after that point has passed.
20.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under A2 also marks the central point under A9 which allocates costs to seller and buyer. In broad terms, A9 allocates costs before the point of delivery to the seller and costs after that point to the buyer.

16. 따라서 예컨대 CIP Las Vegas 또는 CIF Los Angeles와 같이 세 글자 다음에 부가되는 지정장소나 지정항구는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작동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인코텀즈 2020 규칙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그러한 장소는 물품이 매도인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장소나 항구 또는 “인도” 장소가 되거나 매도인이 마련하여야 하는 물품운송의 목적지나 목적항이 되고, D 규칙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가 된다.
17. 모든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A2는 “인도”의 장소나 항구를 정한다. - 그리고 그러한 장소나 항구는 EXW와 FCA에서는 매도인에게 가장 가깝고(매도인의 영업구내) DAP와 DPU, DDP에서는 매수인에게 가장 가깝다.

18. A2에서 정해지는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위험과 비용 모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다.
19. A2의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A3 하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를 확정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장소와 항구에서 A1에 반영되어 있는 계약에 따른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하며 그에 따라 매수인은 그 지점을 지난 뒤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20. A2의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또한 A9 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용을 할당하는 기준점을 확정한다. 대략 말하자면, A9에서 그러한 인도지점 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러한 지점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Delivery points

Extremes and in-betweeners: the four traditional Incoterms® rules groups

▪ 2020, 2022 기출

21. Versions of the Incoterms® rules before 2010 traditionally grouped the rules into four, namely E, F, C and D, with E and D lying at extreme poles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F and C rules lying in between. While the Incoterms® rules have, since 2010, been grouped according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the old groupings are still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oint of delivery. Thus, the delivery point in EXW is an agreed point for collection of the goods by the buyer, whatever the destination to which the buyer will take them. At the other extreme in DAP, DPU and DDP, the delivery point is the same as the destination point to which the seller or its carrier will carry the goods. In the first, EXW, risk transfers before the transport cycle even starts; in the second, the D rules, risk transfers very late in that cycle. Again, in the first, EXW and, for that matter, FCA (seller's premises), the seller performs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In the second, the seller performs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only if they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22. The two rules at the extreme ends of the Incoterms® rules are EXW and DDP. However, traders should consider alternative rules to these two for their international contracts. Thus, with EXW the seller has to merely put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This may cause problems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respectively, with loading and export clearance. The seller would be better advised to sell under the FCA rule. Likewise, with DDP, the seller

owes some obligations to the buyer which can only be performed within the buyer's country, for example obtaining import clearance. It may be physically or legally difficult for the seller to carry out those obligations within the buyer's country and a seller would therefore be better advised to consider selling goods in such circumstances under the DAP or DPU rules.

23. Between the two extremes of E and D rules, there lie the three F rules (FCA, FAS and FOB), and the four C rules (CPT, CIP, CFR and CIF).
24. With all seven F and C rules, the place of delivery is on the seller's side of the anticipated carriage: consequently sales using these Incoterms® rules are often called "shipment" sales. Delivery occurs, for example,
 - a)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in CFR, CIF and FOB; or
 - b) by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CPT and CIP; or
 - c) by loading them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 or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s carrier in FCA.

In the F and C groups, risk transfers at the seller's end of the main carriage such that the seller will have performed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ther or not the goods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This feature, of being shipment sales with delivery happening at the seller's end early in the transit cycle, is common to the F and the C rules, whether they are the maritime Incoterms® rules or the Incoterms® rules intended for any mode[s] of transport.

25. The F and the C rules do, however, differ as to whether it is the seller or buyer who contracts for or arranges the carriage of the goods beyond the place or port of delivery. In the F rules, it is the buyer who makes such arrangement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n the C rules, this obligation falls to the seller.
26. Given that a seller on any of the C rules contracts for or arranges the carriage of the goods beyond delivery, the parties need to know what the destination is to which it must arrange carriage-and that is the place attached to the name of the Incoterms® rule, e.g. "CIF the port of Dalian" or "CIP the inland city of Shenyang". Whatever that named destination is, that place is not and never becomes the place of delivery. Risk will have transferred on shipment or on handing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f delivery, but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have been made by the seller for the named destination. Delivery and destination, then, in the C rules, are necessarily not the same place.

■ 인도지점

극단적 그룹과 중간적 그룹: 4가지의 전통적 인코텀즈규칙 그룹

21. 2010 전의 인코텀즈규칙 버전들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별 규칙들을 4개 그룹, 즉 E 그룹, F 그룹, C 그룹 및 D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인도지점의 측면에서 E 그룹과 D 그룹은 양극단에 있고 F 그룹과 C 그룹은 그 중간에 있다. 2010 버전부터 인코텀즈규칙은 사용된 운송수단에 따라 그룹을 분류하고 있으나 과거의 분류방법은 아직도 인도지점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따라서 EXW에서 인도지점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로 합의된 지점이며, 매수인이 그 물품을 가져갈 목적지는 어느 곳이든 무방하다. 반대편 극단에 있는 DAP, DPU 및 DDP의 경우에 인도지점은 매도인이나 그의 운송인이 운송할 물품의 목적지와 동일하다. 전자 즉 EXW의 경우에는 운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이 이전한다. 후자 즉 D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위험이 이전한다. 또 전자 즉 EXW의 경우 및 같은 문제로 FCA(매도인의 영업구내)의 경우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와 무관하다. 후자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22. 인코텀즈규칙들 중 양극단에 있는 두 규칙, 즉 EXW와 DDP 규칙은 국제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총 11개 규칙 중에 포함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들은 국제계약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를 대체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EXW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단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기만 하면 된다. 이는 적재와 수출통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FCA 규칙으로 매매하는 것이 더 좋다. 마찬가지로 DDP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 국가에서만 이행될 수 있는 의무들 예컨대 수입통관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그러한 의무들을 매수인 국가에서 이행하기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러한 경우에 DAP나 DPU 규칙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다.
23. 양극단의 E 규칙과 D 규칙 사이에 3개의 F 규칙(FCA, FAS 및 FOB)과 4개의 C 규칙(CPT, CIP, CFR 및 CIF)이 있다.
24. 모두 7개의 F 규칙 및 C 규칙에서 인도장소는 예정된 운송[구간상] 매도인 쪽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코텀즈규칙을 사용하는 매매를 흔히 “선적” 매매(“shipment” sales)라 한다. 인도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 a) CFR, CIF 및 FOB에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때, 또는
 - b) CPT 및 CIP에서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또는
 - c) FCA에서는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거나 매수인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으로써.
 F 그룹과 C 그룹에서 위험은 주된 운송을 위한 매도인의 끝단에서 이전하며 그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특징, 즉 선적매매의 경우에 인도는 운송과정의 초반에 매도인의 끝단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은 그것이 해상운송을 위한 인코텀즈규칙인지 또는 모든 운송방식을 위한 인코텀즈규칙인지에 관계없이 F 규칙과 C 규칙에 공통된다.

25. 그러나 F 규칙과 C 규칙은 인도장소나 인도항구 이후의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마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인지 아니면 매수인인지에 관하여 다르다. F 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매수인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C 규칙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26. 모든 C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인도 이후의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마련하도록 하므로 당사자들은 그 운송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해 인코텀즈 규칙의 명칭 뒤에 부가되는 지명 예컨대 “CIF the port of Dalian” 또는 “CIP the inland city of Shenyang”이 곧 그러한 목적지이다. 그러한 지정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그러한 장소는 결코 인도장소가 아니며 인도장소로 되지도 않는다.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또는 교부와 동시에 이미 이전하나, 그 전에 지정목적지로 향하는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C 규칙에서는 인도지와 목적지가 반드시 동일한 곳이 아니다.

Chapter
V

INCOTERMS® 2020 RULES AND THE CARRIER
(제5장 인코텀즈 2020 규칙과 운송인)

27. In the F and the C rules, placing the goods, for example, on board the vessel or handing them over to, or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marks the point at which the goods are “deliver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Therefore this is the point at which risk transfer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28. Given those two important consequences, it becomes essential to identify who the carrier is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carrier, each carrying out a separate leg of transport, for instance by road, rail, air or sea. Of course, where the seller has taken the far more prudent course of making one contract of carriage with one carrie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carriage chain, in a so-called “through” contract of carriage, the problem does not arise. However, where there is no such “through” carriage contract, the goods could be handed over (where the CIP or CPT rules are used) to a road-haulier or rail company for onward transmission to a sea carrier. The same situation may arise with exclusively maritime transport where, for example, the goods are first handed over to a river or feeder short-sea carrier for onward transmission to an ocean carrier.

29. In these situations, when does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to the buy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first, second or third carrier?
30. Before we answer that question, a preliminary point. While in most cases the carrier will be an independent third party engaged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by either the seller or the buyer (depending on whether the parties have chosen a C Incoterms[®] rule or an F Incoterms[®] rule), there are situations where no such independent third party is engaged at all because the seller or the buyer itself will carry the goods sold. This is more likely to happen in the D rules (DAP, DPU and DDP), where the seller may use its own means of transport to carry the goods to the buyer at the delivery destination. Provision has therefore been made in the Incoterms[®] 2020 rules for a seller under the D rules either to contract for carriage or to arrange for carriage, that is to say through its own means of transport: see A4.
31. The question asked at paragraph 29 above is not simply a “carriage” question: it is an important “sale” question. The question is not which carrier can a seller or buyer of goods damaged in transit sue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sale” question is: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carrier involved in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seller to buyer, at which point in the carriage string does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mark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transfer of risk as between seller and buyer?
32. There needs to be a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becaus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ultiple carriers used, and between the seller and/or the buyer with those several carriers, will be complex, depending as they do on the terms of a number of separate contracts of carriage. Thus, for example, in any such chain of contracts of carriage, one carrier, such as a carrier actually performing a leg of the transit by road, may well act as the seller’s agent in concluding a contract of carriage with a carrier by sea.
33. The Incoterms[®] 2020 rules give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where the parties contract on FCA. In FCA, the relevant carrier is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to whom the seller hands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r point agreed in the contract of sale. Thus even if a seller engages a road haulier to take the goods to the agreed delivery point, risk would transfer not at the place and time where the seller hands the goods over to the haulier engaged by the seller, but at the place and time where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engaged by the buyer. This is why the naming of the place or point of delivery as precisely as possible is so important in FCA sales. The same situation can arise in FOB if a seller engages a feeder vessel or barge to take the goods to the vessel engaged by

the buyer. A similar answer is provided by Incoterms® 2020 :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buyer's carrier.

34. With the C rules, the position is more complex and may well attract different solutions under different legal systems. In CPT and CIP, the relevant carrier is likely to be regarded, at any rate in some jurisdictions, as the first carrier to whom the seller hands over the goods under A2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the point of delivery). The buyer knows nothing of the contractual arrangements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he first or subsequent carriers, or indeed between that first carrier and subsequent carriers. What the buyer does know, however, is that the goods are "in transit" to him or her-and that "transit" starts as far as the buyer knows, when the goods are put by the seller into the hands of the first carrier. The consequence is that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at that early stage of "delivery" to the first carrier. The same situation can arise in CFR and CIF if a seller engages a feeder vessel or barge to take the goods to the agreed port of shipment, if any. A similar answer might be suggested in some legal systems: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at the agreed port of shipment, if any.
35. Such a conclusion, if adopted, may seem harsh on the buyer. Risk would transfer from seller to buyer in CPT and CIP sales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The buyer does not know at that stage whether or not that first carrier is responsibl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der the relevant carriage contract. The buyer is not a party to that contract, has no control over it and will not know its terms. Yet, despite this, the buyer would end up bearing the risk in the goods from the very earliest moment of handing over, possibly without recovery against that first carrier.
36. While the buyer would end up bearing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t an early stage of the transport chain, it would, on this view however, have a remedy against the seller. A2/A3 do not operate in a vacuum: under A4,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Even if risk has transferred to the buyer at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under A2/A3, if that first carrier does not undertake responsibility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for the through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e seller, on this view, would remain liable to the buyer under A4. In essence, the seller should make a contract of carriage to the destination named under the contract of sale.

27. F 규칙과 C 규칙에서는 예컨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물품이 매도인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된” 지점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8.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효과 때문에 개별 운송구간 예컨대 도로, 철도, 항공 또는 해상 운송구간을 각각 따로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이 있는 경우에 누가 운송인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매도인이 매우 신중을 가하여 단일운송인이 운송의 모든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하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통”운송계약(“through” carriage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통” 운송계약이 없는 경우에 물품은 (CIP나 CPT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후속하는 해상운송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먼저 도로운송회사나 철도회사에게 교부될 수 있다. 해상운송만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예컨대 물품이 후속하는 해양운송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먼저 강호(江湖)운송인이거나 연안의 피터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9.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언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이 되는가? 최초운송인에게 교부한 때인가 아니면 둘째 또는 셋째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인가?
30.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선결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운송인은 (당사자들이 인코텀즈 C 규칙 또는 F 규칙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독립된 제3자일 것이지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물품을 직접 운송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독립된 제3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인도장소인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도 있는 D 규칙(DAP, DPU 및 DDP)에서 더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는 D 규칙상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운송을 마련하도록 즉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다. A4를 보라.
31. 위의 29번 단락에서 제기된 질문은 단순히 “운송”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요한 “매매”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운송 중 훼손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어느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매매” 문제이며, 물품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까지 운송하는 데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한 경우에 운송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물품교부가 인도지점을 확정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이전을 초래하는지의 문제이다.
32.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대답이 필요하다. 수개의 개별 운송계약들의 계약조건 여하에 따라 복수의 운송인들 사이의 관계와 매도인 및/또는 매수인과 그러한 복수의 운송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그러한 일련의 운송계약(chain of contracts of carriage)에서 도로운송구간을 실제로 담당한 운송인과 같은 어떤 운송인은 해상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대리인(seller's agent)으로 행동할 수 있다.
33.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당사자들이 FCA로 계약한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제공한다. FCA에서 관련운송인(relevant carrier)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며,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에서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도로운송인을 사용하여 물품을 합의된 인도지점까지 운송하더라도 위험은 매도인이 사용한 도로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장소와 시점이 아니라 물품이 매수인이 사용한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인 장소와 시점에 이전한다. 이 때문에 FCA 매매에서는 인도장소나 인도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OB에서도 매도인이 피더선이나 바지선을 사용하여 물품을 매수인이 사용한 선박에 넘기도록 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코텀즈 2020은 유사한 답을 제공한다. 즉 인도는 물품이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적재된 때 일어난다.

34. C 규칙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며, 법제에 따라 다른 해법들을 도출할 것이다. CPT와 CIP의 경우에 어쨌든 어떤 법역에서는 (당사자들이 인도지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A2 하에서 물품을 교부한 최초운송인(first carrier)이 관련운송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최초운송인 또는 후속운송인 사이에 또는 사실 최초운송인과 후속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단지 매수인이 아는 것은 물품이 자신에게로 “운송 중”에 있다는 점 - 그리고 매수인이 아는 한 “운송”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운송인의 수중에 넘긴 때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위험은 그러한 “인도”(delivery)의 초기단계 즉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CFR과 CIF에서도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선적항이 있다면 그러한 선적항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피더선이나 바지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코텀즈 2020은 유사한 답을 제공한다. 즉 인도는 물품이 합의된 선적항이 있다면 그러한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때 일어난다.
35. 이러한 결론은 만약 채택된다면 매수인에게 가혹하게 보일 수 있다. CPT와 CIP 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매수인은 최초운송인이 관련운송계약(relevant carriage contract)상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 계약조건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아마도 최초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을 갖지 못한 채 바로 그 물품교부의 최초시점부터 물품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종결된다.
36. 매수인은 결국 운송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갖기도 한다. A2/A3는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A4 하에서 매도인은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록 물품이 A2/A3에 따라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만약 그 최초운송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상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통운송(through carriage)을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이러한 견해에서는 A4 하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컨대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hapter
VIRULES FOR THE CONTRACT OF SALE AND THEIR RELATIONSHIP
TO OTHER CONTRACTS (제6장 매매계약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37. This discussion of the role of the carrier in the delivery of the goods a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in the C and F Incoterms® rules raises the question: what role do the Incoterms® rules pla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r, indeed, in any of the other contracts typically surrounding an export contract, for example an insurance contract or a letter of credit?
38. The short answer is t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form part of those other contracts: where incorporated, the Incoterms® rules apply to and govern only certain aspects of the contract of sale.
39. This is not the same as saying, however, that the Incoterms® rules have no impact on those other contracts. Goods are exported and imported through a network of contracts that, in an ideal world, should match the one with the other. Thus, the sale contract, for example, will require the tender of a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the carrier to the seller/shipper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and against which the seller/shipper/beneficiary might wish to be paid under a letter of credit. Where the three contracts match, things go well; where they do not, problems rapidly arise.
40. What the Incoterms® rules say, for example, about carriage or transport documents(in A4/B4 and A6/B6), or what they say about insurance cover (A5/B5), does not bind the carrier or the insurer or any of the banks involved. Thus, a carrier is only bound to issue a transport document as required by the contract of carriage it makes with the other party to that contract: it is not bound to issue a transport document complying with the Incoterms® rules. Likewise, an insurer is bound to issue a policy to the level and in the terms agreed with the party purchasing the insurance, not a policy which complies with the Incoterms® rules. Finally, a bank will look only at the documentary requirements in the letter of credit, if any, not at the requirements of the sales contract.
41. However, it is very much in the interests of all the parties to the different contracts in the network to ensure that the carriage or insurance terms they have agreed with the carrier or insurer, or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comply with what the sale contract says about ancillary contracts that need to be made or documents that need to be obtained and tendered. That task does not fall on the carrier, the insurer or the bank, none of whom are

party to the contract of sale and none of whom are, therefore, party to or bound by the Incoterms® 2020 rules. It is, however, in the seller's and buyer's interest to try to ensure that the different parts of the network of contracts match - and the starting point is the sale contract - and therefore, where they apply, the Incoterms® 2020 rules.

37. 인코텀즈 C 규칙과 F 규칙에서 운송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인도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논의는 의문을 야기한다. 즉 인코텀즈규칙은 과연 운송계약에서 또는 사실 전통적으로 예컨대 보험계약이나 신용장과 같은 수출계약을 둘러싼 다른 계약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38. 짧은 대답은 인코텀즈규칙은 그러한 다른 계약들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인코텀즈규칙은 편입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단지 일정한 국면에 적용되고 이를 규율한다.
39. 그러나 이는 인코텀즈규칙이 그러한 다른 계약들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물품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서로 일치하는 계약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출되고 수입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예컨대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송하인(seller/shipper)에게 발행하는 운송서류의 제공을 요구하고 매도인/송하인/수익자(seller/shipper/beneficiary)는 신용장상 그러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계약이 일치할 때 일이 잘 굴러간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속히 발생한다.
40. 예컨대 운송과 운송서류에 관한 인코텀즈규칙의 규정(A4/B4 및 A6/B6) 또는 부보에 관한 규정(A5/B5)은 관련된 해당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어떤 은행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은 자신이 그의 상대방과 체결하는 운송계약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운송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즉 운송인은 인코텀즈규칙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인코텀즈규칙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이 아니라 그의 보험을 구매한 자와 합의한 수준과 조건을 갖춘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끝으로 은행은 매매계약조건이 아니라 오직 신용장상의 서류적 조건을 주목한다.
41. 그러나 그 네트워크 안에 드는 다른 계약들의 모든 당사자들은 그들이 운송인이나 보험자와 합의한 운송조건이나 보험조건 또는 신용장조건이 매매계약의 내용 즉 장차 체결되어야 하는 부수적 계약들이나 장차 구비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는 데 매우 많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작업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따라서 인코텀즈 2020 규칙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에 구속되지도 않는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계약네트워크상의 다른 부분들이 - 먼저 매매계약과 일치하도록 하고 - 그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2020 규칙과 일치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Chapter
VII

THE ELEVEN INCOTERMS® 2020 RULES—“SEA AND INLAND WATERWAY” AND “ANY MODE(S) OF TRANSPORT” : GETTING IT RIGHT (제7장 11개 인코텀즈 2020 규칙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및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 올바른 사용법)

■ 2021 기출

42. The main distinction introduced in the Incoterms® 2010 rules, that between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comprising EXW, FCA, CPT, CIP, DAP, the newly named DPU-the old DAT-and DDP),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comprising FAS, FOB, CFR and CIF) has been retained.
43. The four so-called “maritime” Incoterms® rules are intended for use where the seller places the goods on board (or in FAS alongside) a vessel at a sea or river port. It is at this point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When these rules are us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ose goods is on the buyer’s shoulders from that port.
44. The seven Incoterms®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so-called “multi-modal”), on the other hand, are intended for use where
- a) the point at which the seller hands the goods over to, or places them at the disposal of, a carrier, or
 - b) the point at which the carrier hands the goods over to the buyer, or the point at which they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r
 - c) both points (a) and (b)
- are not on board (or in FAS alongside) a vessel.
45. Where delivery happens and risk transfers in each of these seven Incoterms® rules will depend on which particular rule is used. For example, in CPT, delivery happens at the seller's end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by the seller. In DAP, on the other hand, delivery happen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named place or point of destination.
46. The order in which the Incoterms® 2010 rules were presented has, as we have said, been largely retained in Incoterms® 2020 and it is important to underlin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families of Incoterms® rules so that the right rule is used for the contract of sale depending on the means of transport used.
47. One of the most frequent problems in the use of the Incoterms® rules is the choice of the wrong rule for the particular type of contract.

48. Thus, for example, an FOB inland point (for example an airport or a warehouse) sale contract makes little sense: what type of contract of carriage must the buyer make? Does the buyer owe the seller an obligation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under which the carri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the named inland point or at the nearest port to that point?
49. Again, a CIF named sea port sale contract where the buyer expects the goods to be brought to an inland point in the buyer's country makes little sense. Must the seller procure a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cover to the eventual inland destination intended by the parties or to the seaport named in the sale contract?
50. Gaps, overlaps and unnecessary costs are likely to arise-and all this because the wrong Incoterms[®] rule has been chosen for the particular contract. What makes the mismatch "wrong" is that insufficient regard has been given to the two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Incoterms[®] rules, features which are mirrors of each other, namely the port, place or point of delivery and the transfer of risks.
51. The reason for the frequent misuse of the wrong Incoterms[®] rule is that Incoterms[®] rules are frequently regarded exclusively as price indicators: this or that is the EXW, FOB, or DAP price. The initials used in the Incoterms[®] rules are doubtless handy abbreviations for the formula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Incoterms[®] rules are not, however, exclusively, or even primarily, price indicators. They are a list of general obligations that sellers and buyers owe each other under well-recognised forms of sale contract-and one of their main tasks is to indicate the port, place or point of delivery where the risk is transferred.

42. 인코텀즈 2010 규칙에 도입된 기본분류법 즉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즉 EXW, FCA, CPT, CIP, DAP, 신설 DPU(구 DAT) 및 DDP)과 “해상운송과 내수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즉 FAS, FOB, CFR 및 CIF)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유지되었다.
43. 4개의 이른바 “해상” 인코텀즈규칙(maritime Incoterms rule)은 매도인이 물품을 바다나 강의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하는 (FAS에서는 선측에는 두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이러한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그러한 항구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44. 한편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7개의 인코텀즈규칙(이른바 “복합운송” 인코텀즈규칙 (“multi-modal” Incoterms rule)은 다음과 같은 지점이 선상(船上)(또는 FAS에서는 선측)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
 - a)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는 지점 또는

- b)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지점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지점 또는
c) 위의 (a) 지점과 (b) 지점 모두
45. 이러한 각각의 7개 인코텀즈규칙에서 어디서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이 이전하는지는 사용된 당해 규칙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예컨대 CPT의 경우에 인도는 물품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즉 매도인의 끝단에서 일어난다. 반면에 DAP의 경우에 인도는 물품이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일어난다.
46. 언급하였듯이 인코텀즈 2010 규칙의 배열순서는 인코텀즈 2020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고, 이렇게 인코텀즈규칙을 2개의 묶음으로 분류한 것은 당해 매매계약에 사용된 운송수단에 맞는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47. 인코텀즈규칙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당해 계약의 종류에 맞지 않는 규칙이 선택되는 것이다.
48. 따라서 예컨대 내륙의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 FOB 매매계약(예컨대 FOB airport 또는 FOB warehouse)은 옳지 않다. 이때 매수인은 어떤 종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물품을 그에 지정된 내륙의 지점에서 아니면 그러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항구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49. 또한 매수인이 매수인 국가의 내륙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하는 경우에 어떤 해양항구(sea port)를 지정하는 CIF 매매계약은 옳지 않다. 매도인은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내륙의 최종목적지까지 아니면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해양항구까지 커버하는 운송계약과 보험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50. 공백부분, 중복부분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 이러한 모든 것은 당해 계약에서 잘못된 인코텀즈규칙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일치가 “잘못된 것”이 되는 이유는 인코텀즈규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적 사항, 즉 인도항구,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이라는 사항과 위험이전이라는 사항이 상호간에 거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 잘못된 인코텀즈규칙을 종종 오용하게 되는 이유는 인코텀즈규칙이 종종 전적으로 가격지표라고 오해되기 때문이다. 즉 이것 또는 저것이 EXW 가격, FOB 가격 또는 DAP 가격이라고 말이다. 인코텀즈규칙에 사용되는 머리글자들은 가격산정에 사용되는 의심의 여지없는 편리한 약어들이다. 그러나 인코텀즈규칙은 전적인 가격지표가 아니며 주요한 가격지표도 아니다. 인코텀즈규칙은 널리 인정되는 정형적인 매매계약 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들의 목록이고 - 인코텀즈규칙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위험이 이전하는 인도항구나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 2020, 2022 기출

52. All the ten A/B articles in each of the Incoterms® rules are important-but some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53. There has, indeed, been a radical shake-up in the internal order in which the ten articles within each Incoterms® rule have been organised. In Incoterms® 2020, the internal order within each Incoterms® rule now follows this sequence:
- A1/B1 General obligations
 - A2/B2 Delivery/Taking delivery
 - A3/B3 Transfer of risks
 - A4/B4 Carriage
 - A5/B5 Insurance
 - A6/B6 Delivery/transport document
 - A7/B7 Export/import clearance
 - A8/B8 Checking/packaging/marketing
 - A9/B9 Allocation of costs
 - A10/B10 Notices
54. It will be noticed that concerning the Incoterms® 2020 rules, after recording in A1/B1 the basic goods/payment obligations of the parties, Delivery and the Transfer of risks are moved to a more prominent location, namely to A2 and A3 respectively.
55. The broad sequence thereafter goes:
- ancillary contracts (A4/B4 and A5/B5, carriage and insurance);
 - transport documents (A6/B6);
 - export/import clearance (A7/B7);
 - packaging (A8/B8);
 - costs (A9/B9); and
 - notices (A10/B10).
56. It is appreciated that this change in the order of the A/B articles will take some time-and cost-to become familiar. It is hoped that with delivery and risk now made more prominent, traders will find it easi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Incoterms® rules, i.e. the different points in

time and place at which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with risk transferring to the buyer from that time and point.

57. For the first time, the Incoterms® rules are published both in the traditional format setting out the eleven Incoterms® rules and in a new “horizontal” format setting out the ten articles within each Incoterms® rule under each of the headings listed above in paragraph 53, first for the seller and then for the buyer. Traders can therefore now far more easily see the difference, for example, between the place of delivery in FCA and the place of delivery in DAP; or the items of cost which fall on a buyer in CIF when compared with the items of cost which fall on a buyer in CFR. It is hoped that this “horizontal” representation of the Incoterms® 2020 rules will further assist traders in choosing the Incoterms® rule most appropriate to their commercial requirements.

52. 각 인코텀즈규칙에 규정된 10개의 모든 A/B 조항이 다 중요하나 -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53. 사실 개별 인코텀즈규칙 내에서 조직적으로 짜여 있는 그러한 10개 조항의 내부적 순서는 철저하게 변경되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개별 인코텀즈규칙의 내부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1/B1 일반의무
 - A2/B2 인도/인도의 수령
 - A3/B3 위험이전
 - A4/B4 운송
 - A5/B5 보험
 - A6/B6 인도/운송서류
 - A7/B7 수출/수입통관
 - A8/B8 점검/포장/하인표시
 - A9/B9 비용분담
 - A10/B10 통지
54.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는 A1/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제공/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조항과 위험이전조항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으로 각각 옮겼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55. 그 이후 항목의 대략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부수적 계약들(A4/B4 및 A5/B5, 운송 및 보험)
 - 운송서류(A6/B6)
 - 수출/수입통관(A7/B7)

- 포장(A8/B8)
 - 비용(A9/B9) 및
 - 통지(A10/B10)
56. 이러한 A/B 조항들 순서의 변경은 그에 익숙해질 때까지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도와 위험이 보다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다양한 인코텀즈규칙들 사이의 차이점들,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시간과 장소, 그에 따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차이점들을 보다 쉽게 인지하기를 희망한다.
57. 처음으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11개의 인코텀즈규칙들을 배열하는 전통적 체제(traditional format)와 개별 인코텀즈규칙상의 10개의 조항들을 위의 53번 단락에 열거된 조항제목별로 그리고 선(先)매도인조항-후(後)매수인조항 순으로 편제하는 새로운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를 함께 출간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이제는 예컨대 FCA상의 인도장소와 DAP상의 인도장소의 차이점을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 CIF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항목을 CFR상의 매수인의 비용항목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수평적” 편제방법은 거래당사자들이 상거래상의 여건에 가장 적절한 규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hapter
IX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2020
(제9장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 2021, 2022 기출

58. The most important initiative behind the Incoterms® 2020 rules has been to focus on how the presentation could be enhanced to steer users towards the right Incoterms® rule for their sale contract. Thus:
- a) a greater emphasis in this Introduction on making the right choice;
 - b) a clearer explanation of the demar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sale contract and its ancillary contracts;
 - c) upgraded Guidance Notes presented now as Explanatory Notes to each Incoterms® rule; and
 - d) a re-ordering within the Incoterms® rules giving delivery and risk more prominence.

All these changes, though cosmetic in appearance, are in reality substantial attempts on the part of ICC to assist the international trading community towards smoother export/import transactions.

59. Apart from these general changes, there are more substantive change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when compared with Incoterms® 2010. Before looking at those changes, mention must be made of a particular development in trade practice which occurred since 2010 and which ICC has decided should not lead to a change in the Incoterms® 2020 rules, namely Verified Gross Mass (VGM).

60. Note on Verified Gross Mass (VGM)—Since 1 July 2016, Regulation 2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imposed on shippers in the case of the shipment of containers the obligation either to weigh the packed container using calibrated and certified equipment, or to weigh the contents of the container and add the weight of the container when empty. In either case, the VGM is to be recorded with the carrier. A failure to comply bears the sanction under the SOLAS Convention that the container “should not be loaded onto a ship”: see paragraph 4.2, MSC1/Circ. 1475, 9 June 2014.

These weighing operations obviously incur expense and failure may lead to delay in loading. As this happened after 2010, it is unsurprising that there was some pressure in the consultations leading to Incoterms® 2020 for a clear indication to be given as to who, as between seller and buyer, should bear such obligations.

61. It was felt by the Drafting Group that obligations and costs relating to VGM were too specific and complex to warrant explicit mention in the Incoterms® 2020 rules.

62. Returning to the changes made by ICC to the Incoterms® 2010 rule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these are:

- [a] Bills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and the FCA Incoterms® rule
- [b] Costs, where they are listed
- [c]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 in CIF and CIP
- [d] Arranging for carriage with seller's or buyer's own means of transport in FCA, DAP, DPU and DDP
- [e] Change in the three-letter initials for DAT to DPU
- [f] Inclusion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within carriage obligations and costs
- [g] Explanatory Notes for Users

58.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매매계약에서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인코텀즈의 제시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력하는 데 있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 a) 본 소개문(Introduction)에서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을 더욱 강조하는 것

- b)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사이의 구분과 연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 c) 각 인코텀즈규칙에 대한 기존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현재의 설명문(Explanatory Note)을 제시하는 것
 - d) 개별 인코텀즈규칙 내에서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인도와 위험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
- 이러한 모든 변경은 비록 외견적인 포장이지만 하나 실제로 국제거래업계로 하여금 수출/수입 거래를 더욱 순조롭게 하도록 돕고자 하는 ICC 측의 실질적 시도이다.

59. 이러한 일반적 변경 외에도 인코텀즈 2010와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20 규칙에는 더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기 전에 먼저 꼭 언급할 것이 있는데 2010년 이후 거래관행의 특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ICC는 이것 때문에 인코텀즈 2020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검증총중량(Verified Gross Mass: VGM)(혹은 총중량검증제)이 그것이다.
60. 검증총중량(VGM)에 관한 노트 - 2016. 7. 1. 이후 국제해사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하의 규정 2(Regulation 2)에서는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에게 [적입완료]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수치로 측정되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하고 그에 빈 컨테이너의 중량을 합할 의무를 부과한다. 각각의 경우에 VGM은 운송인에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 위반이 있으면 SOLAS 협약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어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para 4.2, MSC1/Circ.1475, 9 June 2014 참조).
- 이러한 측량작업은 분명히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불이행은 적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이 2010년 후에 발생함에 따라 의견수렴과정에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약간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61. 초안그룹(Drafting Group)은 VGM에 관한 의무와 비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62. 이에 ICC가 인코텀즈 2010 규칙을 이번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 [b]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 [c]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 [d]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 [e]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 [g]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Bills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and the FCA Incoterms® rule

A

■ 2005, 2008, 2013, 2014, 2017 기출

63. Where goods are sold FCA for carriage by sea, sellers or buyers (or more likely their banks where a letter of credit is in place) might want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64. However, delivery under the FCA rule is completed before the loading of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It is by no means certain that the seller can obtain an on-board bill of lading from the carrier. That carrier is likely,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to be bound and entitled to issue an on-board bill of lading only once the goods are actually on board.
65. To cater for this situation, FCA A6/B6 of Incoterms® 2020 now provides for an additional option. The buyer and the seller can agree that the buyer will instruct its carrier to issue an on-board bill of lading to the seller after the loading of the goods, the seller then being obliged to tender that bill of lading to the buyer, typically through the banks. ICC recognises that, despite this somewhat unhappy union between an on-board bill of lading and FCA delivery, this caters for a demonstrated need in the marketplace. Finally, it should be emphasised that even where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opted, the seller is under no obligation to the buyer a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66. Does it remain true to say that where containerised goods are delivered by seller to buyer by handing over to a carrier before loading onto a ship, the seller is well advised to sell on FCA terms rather than on FOB terms?
-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Yes. Where Incoterms® 2020 have made a difference, however, is that where such a seller still wants or needs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he new additional option in the FCA term A6/B6 makes provision for such a document.

▶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63. 물품이 FCA 규칙으로 매매되고 해상운송 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또는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들의 은행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은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원할 수 있다.
64. 그러나 FCA 규칙에서 인도는 물품의 본선적재 전에 완료된다.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적선하증권(on-board bill of lading)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운송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야 비로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65.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제 인코텀즈 2020 FCA A6/B6에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규정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매도인은 전형적으로 은행들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ICC는 이러한 선적선하증권과 FCA 인도 사이의 약간의 불편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시장의 증명된 필요에 부응한다고 인정한다. 끝으로 이러한 선택적 기제가 채택되더라도 매도인은 운송계약조건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66. 매도인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여전히 진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매도인이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여전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FCA 조건 A6/B6상의 새로운 추가적 옵션이 곧 그러한 서류에 관한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Costs, where they are listed

B

67. In the new ordering of the articles within the Incoterms® 2020 rules, costs now appear at A9/B9 of each Incoterms® rule. Apart from that re-location, however, there is another change that will become obvious to users early on. The various costs which fall to be allocated by various articles within the Incoterms® rules have traditionally appeared in different parts of each Incoterms® rule. Thus, for example, costs related to the obtaining of a delivery document in FOB 2010 were mentioned in A8, the article under the heading "Delivery Document", but not in A6, the article under the heading "Allocation of Costs."
68. In the Incoterms® 2020 rules, however, the equivalent of A6/B6, namely A9/B9, now lists all the costs allocated by each particular Incoterms® rule. A9/B9 in the Incoterms® 2020 rules are consequently longer than A6/B6 in the Incoterms® 2010 rules.
69. The purpose is to provide users with a one-stop list of costs, so that the seller or buyer can now find in one place all the costs for which it would be responsible under that particular Incoterms® rule. Items of cost are also mentioned in their home article: thus, for example, the costs involved in obtaining documents in FOB still also appear at A6/B6 as well as at A9/B9. The thinking here was that users interested in discovering the specific allocation of documentary costs might be more inclined to go to the specific article dealing with delivery documents rather than to the general article listing all the costs.

B.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67. 인코텀즈 2020 규칙들 내의 새로운 조항순서에 따라 이제 비용은 각 인코텀즈규칙의 A9/B9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변경 외에도 사용자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다른 변경이 있다. 인코텀즈규칙의 여러 조항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다양한 비용은 전통적으로 개별 인코텀즈규칙의 여러 부분에 나뉘어 규정되었다. 예컨대 FOB 2010에서 인도서류의 취득에 관한 비용은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이라는 제목의 A6이 아니라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라는 제목의 A8에서 언급되었다.
68. 그러나 이제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는 그러한 A6/B6에 상당하는 조항 즉 A9/B9에서 당해 인코텀즈 규칙상의 분담비용을 모두 열거한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규칙의 A9/B9은 인코텀즈 2010 규칙의 A6/B6보다 더 길다.
69. 그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일람표(one-stop list)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인코텀즈규칙상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용항목은 또한 그 항목의 본래조항(home article)에도 언급되어 있고, 따라서 예컨대 FOB에서 서류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A9/B9 뿐만 아니라 A6/B6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특정한 서류에 관한 비용분담을 알고자 하는 사용자는 모든 비용을 열거하는 일반조항보다는 인도서류를 다루는 특별조항을 보는 경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 in CIF and CIP

C

70. In the Incoterms® 2010 rules, A3 of both CIF and CIP imposed on the seller the obligation to “obtain at it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complying at least with the minimum cover as provided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loyd’s Market Association/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Institute Cargo Clauses (C) provide cover for a number of listed risks, subject to itemised exclusions; Institute Cargo Clauses (A), on the other hand, cover “all risks”, again subject to itemised exclusions. During the consultations leading to the Incoterms® 2020 rules, the case was made for moving from Institute Cargo Clauses (C) to Institute Cargo Clauses (A), thus increasing the cover obtained by the seller for the benefit of the buyer. This could, of course, also involve an additional cost in premium. The contrary case, namely to stay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C), was equally strongly put, particularly by those involved in the maritime trade of commodities.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within and beyond the Drafting Group, the decision was made to provide for different minimum cover in the CIF Incoterms® rule and in the CIP

Incoterms® rule. In the first, which is much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maritime commodity trades, the status quo has been retained,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C) as the default position, although it is, of course,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to higher cover. In the second, namely the CIP Incoterms® rule, the seller must now obtain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A), although it is, of course, again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on a lower level of cover.

C.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70.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는 CIF 및 CIP의 A3에서 매도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로이즈시장 협회/국제보험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은 항목별 면책위험의 제한을 받는 다수의 담보위험을 열거한다. 한편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은 항목별 면책위험의 제한 하에 “모든 위험”(“all risks”)을 담보한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초안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에서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도인이 취득하는 부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수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연히 이는 보험료 면에서 비용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특히 일차상품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대의견 즉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의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동등하게 강력히 제기하였다. 초안그룹 내외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친 후 CIF 인코텀즈 규칙과 CIP 인코텀즈규칙에서 최소부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전자 즉 CIF 규칙은 일차상품의 해상무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CIF 규칙에서는 현상 유지 즉 협회적하약관 C-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부보를 하기로 달리 합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후자 즉 CIP 규칙의 경우에 이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물론 또한 당사자들은 원한다면 보다 낮은 수준의 부보를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Arranging for carriage with seller's or buyer's own means of transport in FCA, DAP, DPU and DDP

D

71.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t was assumed throughout that where the goods were to be carri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y would be carried by a third-party carrier engaged for the purpose either by the seller or the buyer, depending on which Incoterms® rule was used.
72. It became clear in the deliberations leading to Incoterms® 2020, however, that there were some situations where, although the goods were to be carri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y could be so carried without any third-party carrier being engaged at all. Thus, for example, there was nothing stopping a seller on a D rule from arranging for such carriage without outsourcing that function to a third party, namely by using its own means of transportation. Likewise, with an FCA purchase, there was nothing to stop the buyer from using its own vehicle for the collection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port to the buyer's premises.
73. The rules appeared not to take account of these eventualities. The Incoterms® 2020 rules now do, by expressly allowing not only for the making of a contract of carriage, but also for simply arranging for the necessary carriage.

▶ D.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허용

71.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 당해 인코텀즈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가정되었다.
72. 그러나 인코텀즈 2020 초안의 논의과정에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예컨대 D 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즉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FCA 매매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73. 인코텀즈 2010 규칙은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인코텀즈 2020규칙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단순히 필요한 운송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경우를 고려한다.

Change in the three-letter initials for DAT to DPU

E

74. The only difference between DAT and DAP in the Incoterms® 2010 rules was that in DAT the seller delivered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into a “terminal”; whereas in DAP, the seller delivered the goods when the goods we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for unloading. It will also be recalled that the Guidance Note for DAT in Incoterms® 2010 defined the word “terminal” broadly to include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75. ICC decided to make two changes to DAT and DAP. First, the order in which the two Incoterms® 2020 rules are presented has been inverted, and DAP, where delivery happens before unloading, now appears before DAT. Secondly, the name of the rule DAT has been changed to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emphasising the reality that the place of destination could be any place and not only a “terminal”. However, if that place is not in a terminal, the seller should make sure that the place where it intends to deliver the goods is a place where it is able to unload the goods.

E.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74.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DAT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터미널”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였고 DAP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인도를 한 것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인코텀즈 2010의 DAT 사용지침(Guidance Note)에서는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넓게 정의하여 “...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가 포함되도록 하였다는 점도 기억할 것이다.
75. ICC는 DAT와 DAP에서 두 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이러한 두 인코텀즈 2020 규칙의 등장순서가 서로 바뀌었고, 양하 전에 인도가 일어나는 DAP가 이제는 DAT 앞에 온다. 둘째, DAT 규칙의 명칭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고, 이는 “터미널”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지가 터미널에 있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Inclusion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within carriage obligations and costs

F

76. It will be recalled that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made a rather subdued entry into the Incoterms® 2010 rules, through A2/B2 and A10/B10 in each rule. The Incoterms® 2010 rules were the first revision of the Incoterms® rules to come into force after security-related concerns became so prevalent in the early part of this century. Those concerns, and the associated shipping practices which they have created in their wake, are now much more established. Connected as they are to carriage requirements, an express allocation of security-related obligations has now been added to A4 and A7 of each Incoterms® rule. The costs incurred by these requirements are also now given a more prominent position in the costs article, namely A9/B9.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76. 되돌아보면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는 보안관련요건이 개별 규칙의 A2/B2 내지 A10/B10에 걸쳐 다소 암전하게 들어가 있었다. 인코텀즈 2010 규칙은 21세기 초반에 들어 보안관련 우려가 널리 확산된 후 시행된 인코텀즈규칙의 최초 개정이었다. 그러한 우려 및 그에 관하여 초기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성립된 선적관행은 이제 상당히 정립되었다. 그러한 우려는 운송요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보안관련의무의 명시적 할당이 개별 인코텀즈규칙의 A4와 A7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또한 이제는 더 현저한 위치 즉 비용조항인 A9/B9에 규정된다.

Explanatory Notes for Users

G

77. The Guidance Notes appearing at the start of each Incoterms® rule in the 2010 version now appear as “Explanatory Notes for Users”. These Notes explain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2020 rule, such as when it should be used, when risk transfers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The Explanatory Notes are intended (a) to help the user accurately and efficiently steer towards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 for a particular transaction; and (b) to provide those deciding or advising on disputes or contracts governed by Incoterms® 2020 with guidance on matters which might require interpretation. For guidance on more fundamental issues that cut across the Incoterms® 2020 rules more generally, reference may, of course, also be made to the text of this Introduction.

G.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77. 2010 버전에서 개별 인코텀즈규칙의 첫머리에 있던 사용지침(Guidance Note)은 이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이 되었다. 이러한 설명문은 각 규칙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은 언제 이전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용분담은 어떠한지와 같은 개별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기초를 설명한다. 설명문의 목적은 (a) 사용자들이 당해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는 것과 (b)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물론 인코텀즈 2020 규칙 전반을 관통하는 보다 기초적인 쟁점들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보다 일반적으로는 본 소개문(Introduction)을 참조할 수 있다.

CAUTION WITH VARIANTS OF INCOTERMS® RULES

H

78. Sometimes the parties want to alter an Incoterms® rule. The Incoterms® 2020 rules do not prohibit such alteration, but there are dangers in so doing. In order to avoid any unwelcome surprises, the parties would need to make the intended effect of such alterations extremely clear in their contract. Thus, for example, if the allocation of cost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is altered in the contract, the parties should also clearly state whether they intend to vary the point at which delivery is made and th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H. 인코텀즈규칙 변용(變用)시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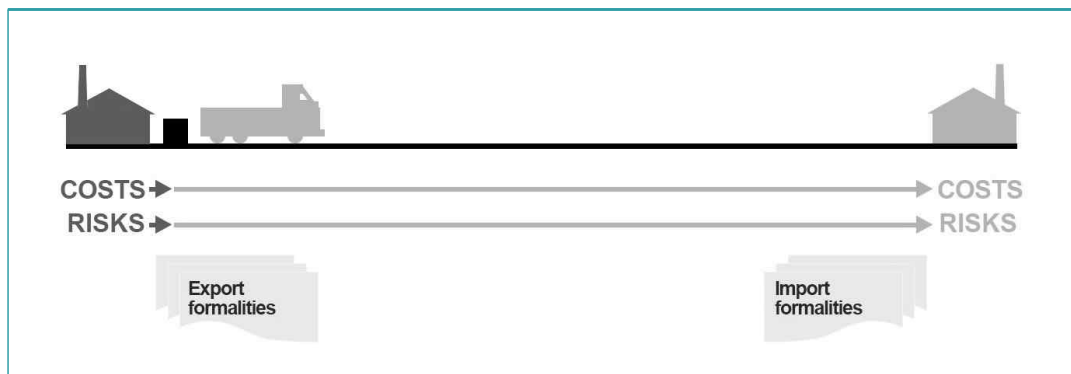
78. 때때로 당사자들은 인코텀즈규칙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길 원한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그러한 변경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의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비용분담을 계약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또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지점(point)까지도 바꾸기로 의도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EXW | Ex Works

■ 2020, 2023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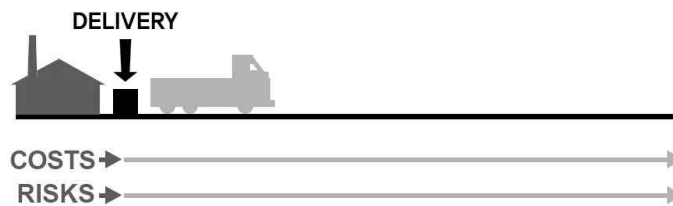
■ EXW(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20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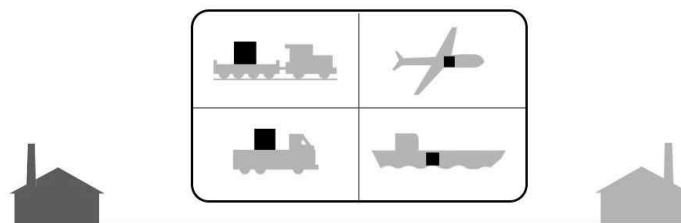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place (like a factory or warehouse), and
- that named place may or may not be the seller’s premi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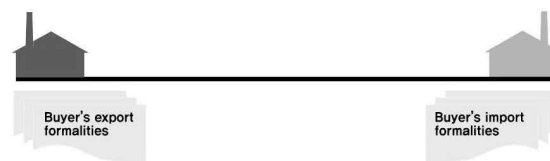
For delivery to occur,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r modes of transport, if any, sel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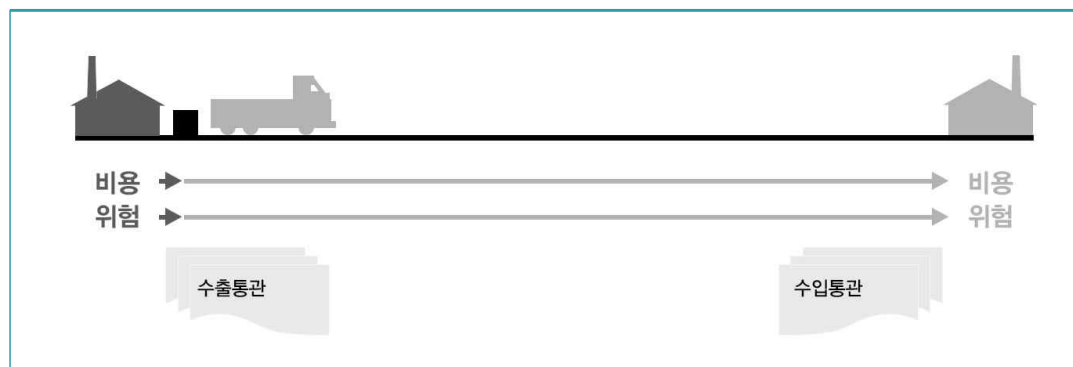
3. **Place or precise point of delivery** - The parties need only name the place of delivery. Howev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also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recis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 named precise point of delivery makes it clear to both partie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when risk transfers to the buyer: such precision also marks the point at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If the parties do not name the point of delivery, then they are taken to have left it to the seller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buyer may incur the risk that the seller may choose a point just before the point at which goods are lost or damaged. Best for the buyer therefore to select the precise point within a place where delivery will occur.
4. **A note of caution to buyers** - EXW is the Incoterms® rule which imposes the least set of obligations on the seller.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erefore, the rule should be used with care for different reasons as set out below.
5. **Loading risks** - Delivery happens-and risk transfers-when the goods are placed, not loaded, at the buyer's disposal. However,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ccurring while the loading operation is carried out by the seller, as it may well be, might arguably lie with the buyer, who has not physically participated in the loading. Given this possibility, it would be advisable, where the seller is to load the goods, for the parties to agree in advance who is to bear the risk of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loading. This is a common situation simply because the seller is more likely to have the necessary loading equipment at its own premises or because applicable safety or security rules prevent access to the seller's premises by unauthorised personnel. Where the buyer is keen to avoid any risk during loading at the seller's premises, then the buyer ought to consider choosing the FCA rule (under which, if the goods are delivered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owes the buyer an obligation to load, with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at operation remaining with the seller).

6. **Export clearance** - With delivery happening when the goods are at the buyer's disposal eith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oint typically with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within the same Customs Union, there is no obligation on the seller to organise export clearance or clearance within third countries through which the goods pass in transit. Indeed, EXW may be suitable for domestic trades, where there is no intention at all to export the goods. The seller's participation in export clearance is limi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such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the buyer may require for the purpose of exporting the goods. Where the buyer intends to export the goods and where it anticipates difficulty in obtaining export clearance, the buyer would be better advised to choose the FCA rule, under which the obligation and cost of obtaining export clearance lies with the seller.



EXW | 공장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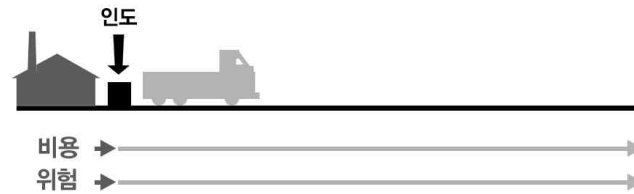
■ EXW(지정인도장소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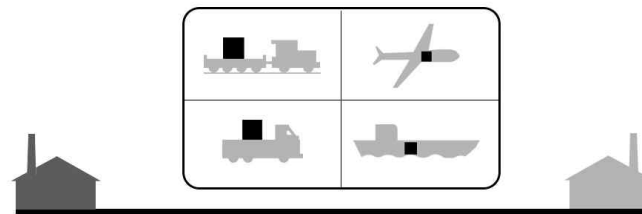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한 때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그리고
- 그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인도가 일어나기 위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선택되는 어떤 운송방식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인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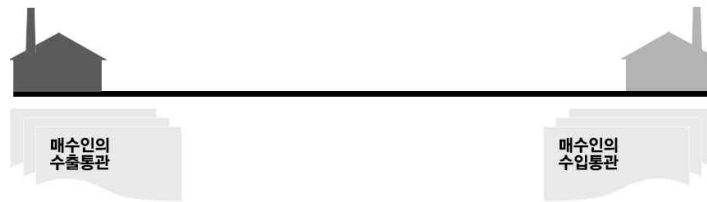
3. **인도장소 또는 정확한 인도지점** - 당사자들은 단지 인도장소만 지정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또한 지정인도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정확한 지정인도지점은 양당사자에게 언제 물품이 인도되는지와 언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정확한 지점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 기준점을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인도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된다. 이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지점이 아닌 그 직전의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 인도장소가 이루어질 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매수인을 위한 유의사항** - EXW는 매도인에게 최소의 일련의 의무를 지우는 인코텀즈규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이 규칙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5. **적재위험** -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난다. - 그리고 그때 위험이 이전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적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으레 그렇듯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적재 중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합의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매도인이 그의 영업구내에서 필요한 적재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혹은 적용가능한 안전규칙이나 보안규칙에 의하여 권한 없는 인원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FCA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인도 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적재의무를 부담하고 적재작업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6. **수출통관** -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또는 전형적으로 매도인의 국가나 관세동맹지역 내에 있는 다른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가 일어나므로, 매도인은 수출통관이나 운송 중에 물품이 통과할 제3국의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사실 EXW는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거래에 적절하다. 수출통관에 관한 매도인의 참여는 물품수출을 위하여 매수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나 수출통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수출통관을 할 의무와 그에 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agre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notice given under A10.

▶ A2 인도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둬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지정인도장소 내에 합의된 특정한 지점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이용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고 A10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 또는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Carriage

B4

It is up to the buyer to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lace of delivery.

▶ A4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B4 운송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이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Proof of delivery

B6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B6 인도의 증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transit/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Export/import clearance

B7

Where applicable, it is up to the buyer to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transit/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B7 수출/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이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 a)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reimburse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assistance or information under A4, A5, or A7;
- c) pay, where applicable,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export; and
- d) pay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failing eith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its disposal or to give appropriat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A4, A5 및 A7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 c)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 d) 물품이 자신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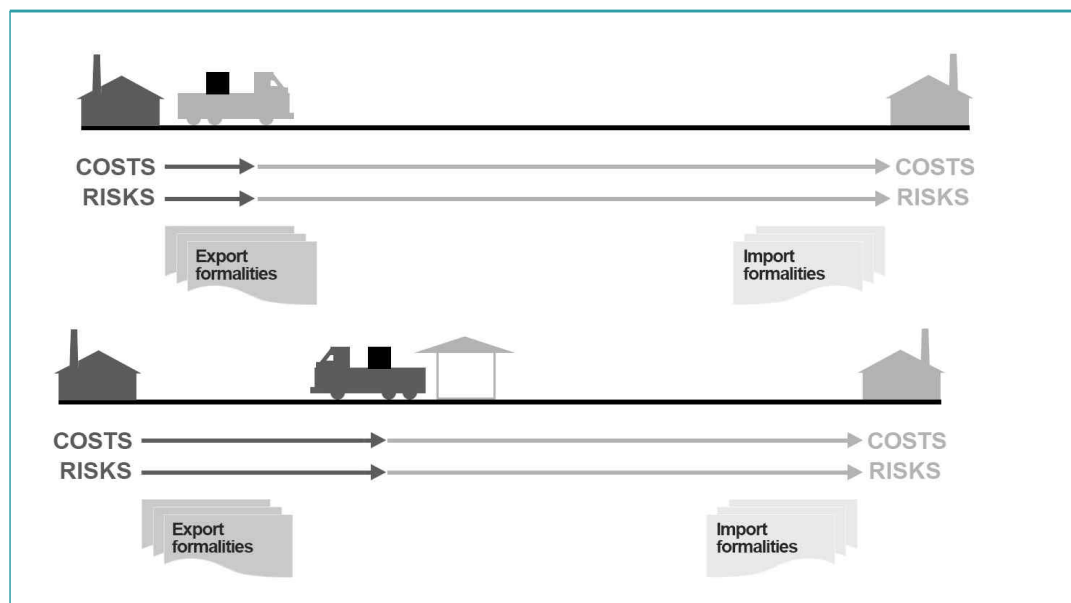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FCA | Free Carrier

■ 2020, 2023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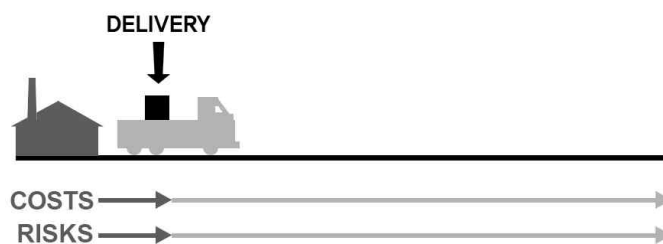
■ FCA(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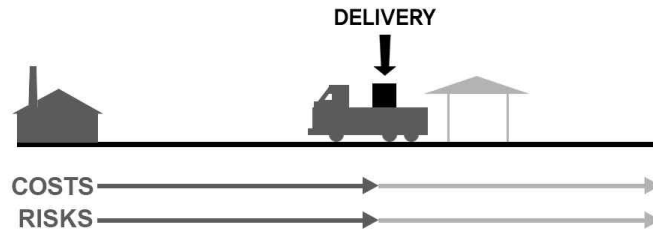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Free Carrier (named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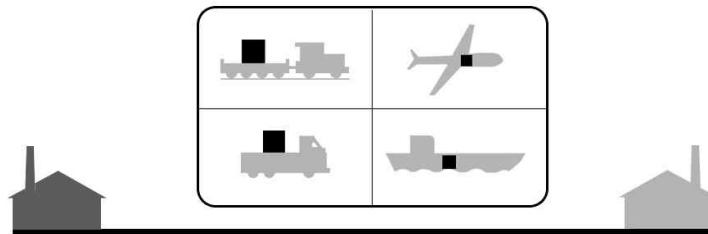
-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 are ready for unloading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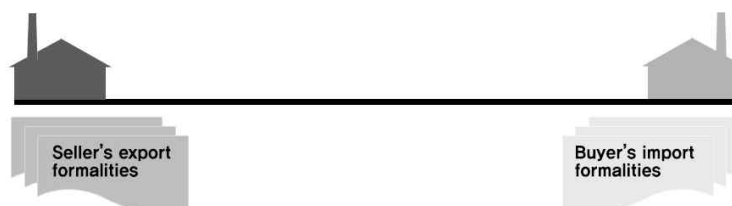
Whichever of the two is chosen as the place of delivery, that place identifies wher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and the time from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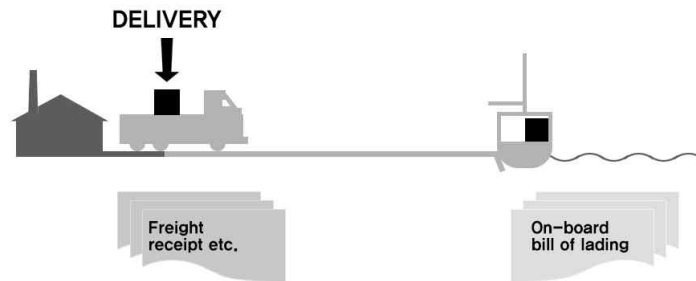
3. **Place or point of delivery** - A sale under FCA can be concluded naming only the place of delivery, eith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elsewhere, without specifying the precise point of delivery within that named place. Howev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also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recis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 named precise point of delivery makes it clear to both partie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when risk transfers to the buyer; such precision also marks the point at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Where the precise point is not identified, however, this may cause problems for the buyer. The seller in this case has the right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at point becomes the point of delivery, from which risk and costs transfer to the buyer. If the precise point of delivery is not identified by naming it in the contract, then the parties are taken to have left it to the seller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buyer may incur the risk that the seller may choose a point just before the point at which goods are lost or damaged. Best for the buyer therefore to select the precise point within a place where delivery will occur.

4. **'or procur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although not exclusive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5. **Export/import clearance** -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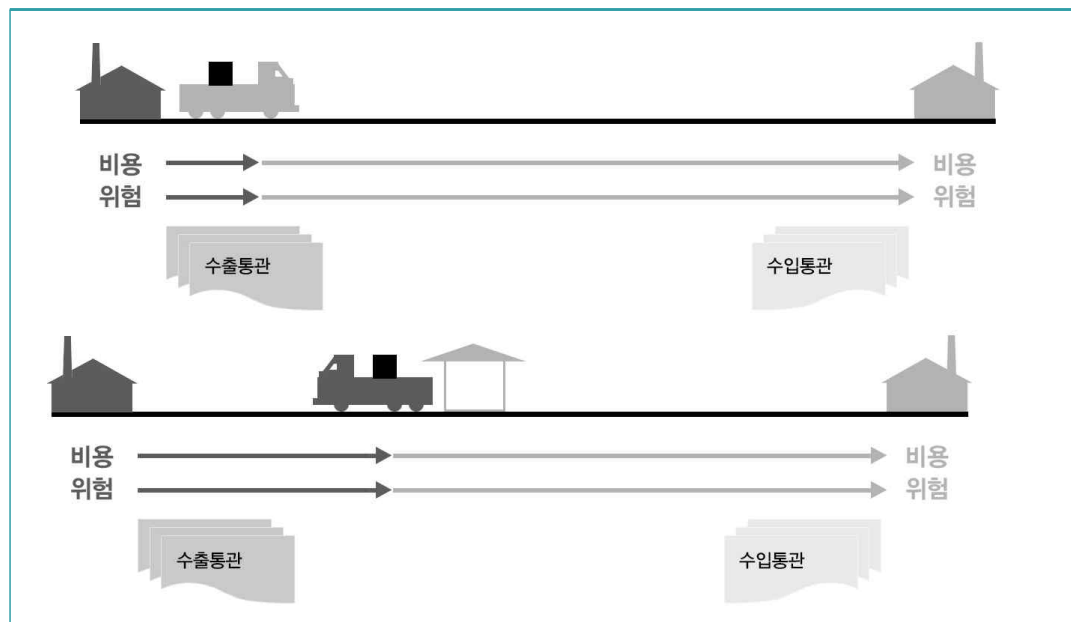


6. **Bills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in FCA sales** - We have already seen that FCA is intended for use irrespective of the mode or modes of transport used. Now if goods are being picked up by the buyer's road-haulier in Las Vegas, it would be rather uncommon to expect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o be issued by the carrier from Las Vegas, which is not a port and which a vessel cannot reach for goods to be placed on board. Nonetheless, sellers selling FCA Las Vegas do sometimes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need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ypically because of a bank collection or a letter of credit requirement), albeit necessarily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placed on board in Los Angeles as well as stating that they were received for carriage in Las Vegas. To cater for this possibility of an FCA seller needing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FCA Incoterms® 2020 has, for the first time, provided the following optional mechanism.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the contract, the buyer must instruct its carrier to issue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o the seller. The carrier may or may not, of course, accede to the buyer's request, given that the carrier is only bound and entitled to issue such a bill of lading once the goods are on board in Los Angeles. However, if and when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to the seller by the carrier at the buyer's cost and risk, the seller must provide that same document to the buyer, who will need the bill of lading in order to obtain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carrier. This optional mechanism becomes unnecessary, of course, if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seller will present to the buyer a bill of lading stating simply that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for shipment rather than that they have been shipped on board. Moreover, it should be emphasised that even where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opted, the seller is under no obligation to the buyer a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Finally, when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opted, the dates of delivery inland and loading on board will necessarily be different, which may well create difficulties for the seller under a letter of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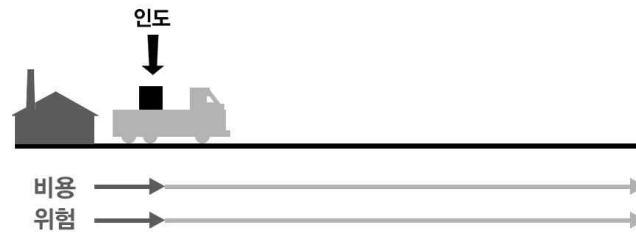
■ FCA(지정인도장소 기입) Incoterm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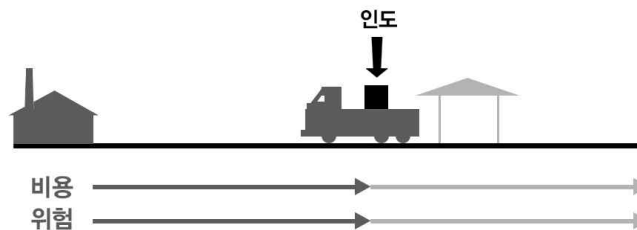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 “운송인인도(지정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첫째**,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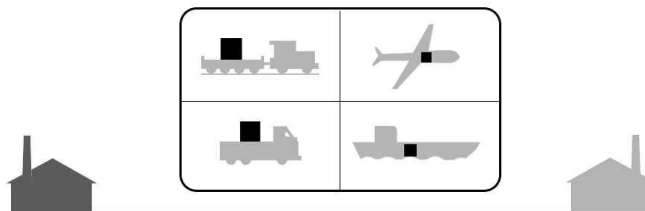


- **둘째**,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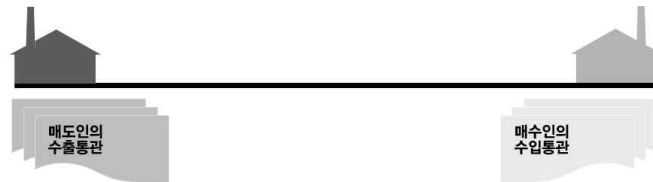


그러한 두 장소 중에서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자 또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 - FCA 매매는 지정장소 내에 정확한 인도지점을 명시하지 않고서 매도인의 영업구내나 그 밖의 장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지 인도장소로 지정하여 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정확한 지정인도지점은 양당사자에게 언제 물품이 인도되는지와 언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정확한 지점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 기준점을 확정한다. 그러나 정확한 지점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즉 이러한 지점이 곧 인도지점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계약에서 이를 지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도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된다. 이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지점이 아닌 그 직전의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 인도가 이루어질 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꼭 이 분야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일차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출/수입통관** - FCA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FCA 매매에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 이미 언급하였듯이 FCA는 사용되는 운송방식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매수인의 도로운송인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물품을 수거(pick up)한다고 할 때,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급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라스베이거스는 항구가 아니어서 선박이 물품적재를 위하여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CA Las Vegas 조건으로 매매하는 매도인은 때로는 (전형적으로 은행의 추심조건이나 신용장조건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품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것으로 기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필요로 하는 FCA 매도인의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코텀즈 2020 FCA에서는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제를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물론 운송인으로서의 물품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적재된 때에만 그러한 선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바로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본선적재 사실이 아니라 단지 물품이 선적을 위하여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적 기제는 불필요하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선택적 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

끝으로, 이러한 선택적 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내륙의 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는 부득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신용장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r procur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b)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Delivery is completed either:
- a) If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when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
 - or
 - b) In any other cas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그 지정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
또는
2. B10(b)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
또는,
3. 그러한 시기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
인도는 다음의 시점에 완료된다.
 - a)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또는
 - b) 그 밖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지정인도장소 내에 매수인이 B10(d)에 따라 통지한 특정한 지점이 없고 또한 이용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nominate a carrier or another person under A2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a) fails to take the goods into its charge,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tim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b); or, if no such tim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A2상의 운송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B10(a)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b)에 따라 선택한 시기부터 또는 그러한 시기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Carriage

B4

The buy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lace of delivery,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A4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Where the buyer has instructed the carrier to issue to the seller a transport document under B6, the seller must provide any such document to the buyer.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the buyer must instruct the carrier to issue to the seller, at the buyer's cost and risk,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such as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일치하게 인도되었다는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 (i) the buyer fails to nominate a carrier or another person under B10, or
 - (ii)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take the goods into its charge,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운송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has failed to take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Notices

B10

The buyer must notify the seller of

- a) the name of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within sufficient time as to enable the seller to deliver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 b) the selected time, if any,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delivery when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will receive the goods;
- c) the mode of transport to be used by the carrier or the person nominated including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and
- d) the point where the goods will be receiv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 A10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B10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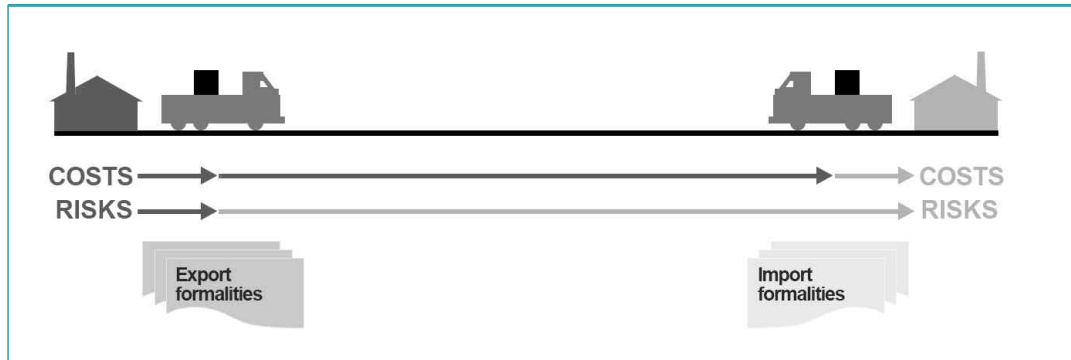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이름. 이는 매도인이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충분한 기간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 b)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
- c)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운송방식 및
- d)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

CPT | Carriage Paid To

■ 2022, 2023 기출

■ CPT(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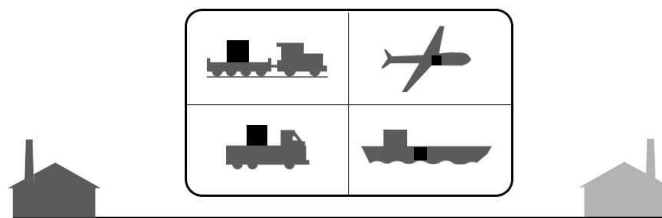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and transfers the risk-to the buyer

- ✓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 ✓ contracted by the seller
- ✓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 The seller may do so by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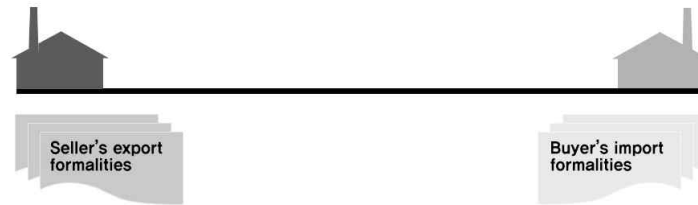
Once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does not guarantee that the goods will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in sound condition, in the stated quantity or indeed at all. This is becaus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buyer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the seller must nonetheless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agreed destination. Thus, for exampl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in Las Vegas (which is not a port) for carriage to Southampton (a port) or to Winchester (which is not a port). In either case, delivery transferring risk to the buyer happens in Las Vegas, and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f carriage to either Southampton or Winchester.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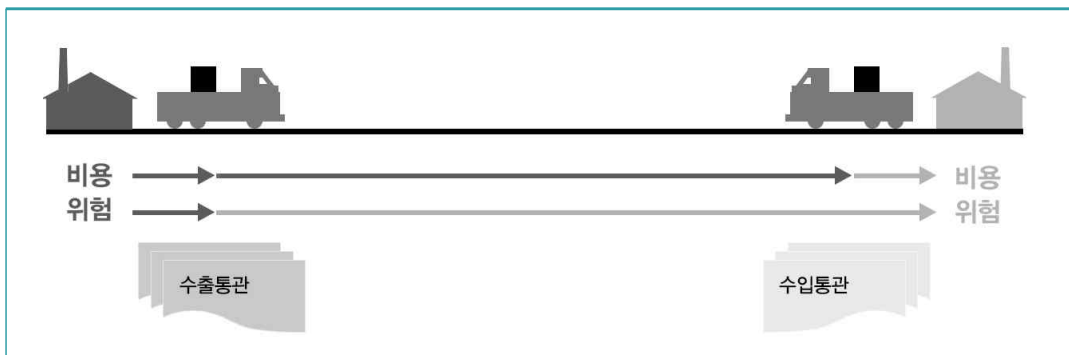
3. **Places (or points) of delivery and destination** - In CPT, two locations are important: the place or point (if any) at which the goods are delivered (for the transfer of risk) and the place or point agreed as the destination of the goods (as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promises to contract for carriage).
4.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of delivery with precision**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both places, or indeed points within those places,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of sale.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if any) of delivery as precisely as possible is important to cater for the common situation where several carriers are engaged, each for different legs of the transit from delivery to destination. Where this happens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lace or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transfer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transfer at a later stage (e.g. at a sea or river port or at an airport), or indeed an earlier one (e.g. an inland point some way away from a sea or river 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and to carefully think through the consequences of so doing in case the goods are lost or damaged.
5. **Identifying the destination as precisely as possible** -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of sa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is is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and this is the point to which the costs of carriage fall on the seller.
6.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7. **Costs of unloading at destination** -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8. **Export/import clearance** -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or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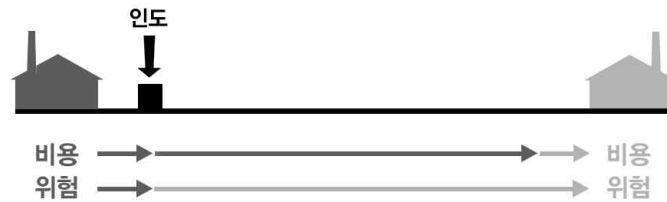
CPT | 운송비지급인도

■ CPT(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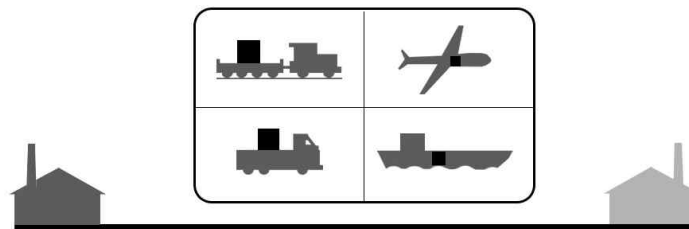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 의미한다.
 - ✓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 ✓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 ✓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물품이 이러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되면 매도인은 그 물품이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명시된 수량 또는 그 전량이 도착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로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항구인) 사우샘프턴이나 (항구가 아닌) 원체스터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항구가 아닌)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인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고 매도인은 사우샘프턴이나 원체스터로 향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인도장소(또는 인도지점)와 목적지** - CPT에서는 두 곳이 중요하다. 물품이 (위험이전을 위하여) 인도되는 장소 또는 지점(있는 경우)이 그 하나이고, 물품의 목적지로서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이 다른 하나이다(매도인은 이 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이다).
4. **정확한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두 장소(인도장소 및 목적지) 또는 그러한 두 장소 내의 실제 지점들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인도장소나 인도지점(있는 경우)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하여 인도지부터 목적지까지 사이에 각자 상이한 운송구간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특정한 인도장소나 인도지점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본 규칙이 규정하는] 보충적 입장은,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하여 매수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서 제1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 후의 어느 단계에서 (예컨대 바다나 강의 항구에서 또는 공항에서) 또는 그 전의 어느 단계에서 (예컨대 바다나 강의 항구로부터 멀리 있는 내륙의 어느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되길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고 물품이 실제로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5. **가급적 정확한 목적지 지정** - 당사자들은 또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지점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6.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 (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7. **목적지의 양하비용** -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상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8. **수출/수입통관** - CPT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t the point within that place.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지정목적지 내의 지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customary manner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carriage of the type of goods sold.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항로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 및 지정목적지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s]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and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If agreed or customary, the document must also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an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A6 인도/운송서류

관행이 있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A4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한다.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서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ranspor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g)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e)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f)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적재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및
- e)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f)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 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dispatch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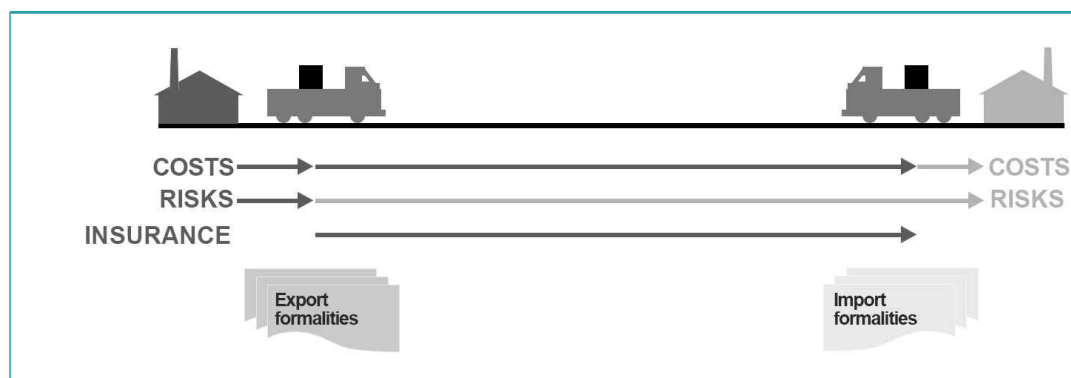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2020, 2023 기출

■ CIP(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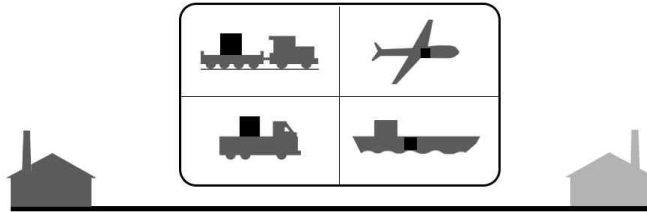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and transfers the risk-to the buyer

- ✓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 ✓ contracted by the seller
- ✓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 The seller may do so by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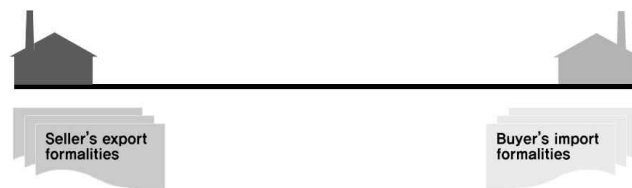
Once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does not guarantee that the goods will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in sound condition, in the stated quantity or indeed at all. This is becaus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buyer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the seller must nonetheless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agreed destination. Thus, for exampl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in Las Vegas (which is not a port) for carriage to Southampton (a port) or to Winchester (which is not a port). In either case, delivery transferring risk to the buyer happens in Las Vegas, and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f carriage to either Southampton or Winchester.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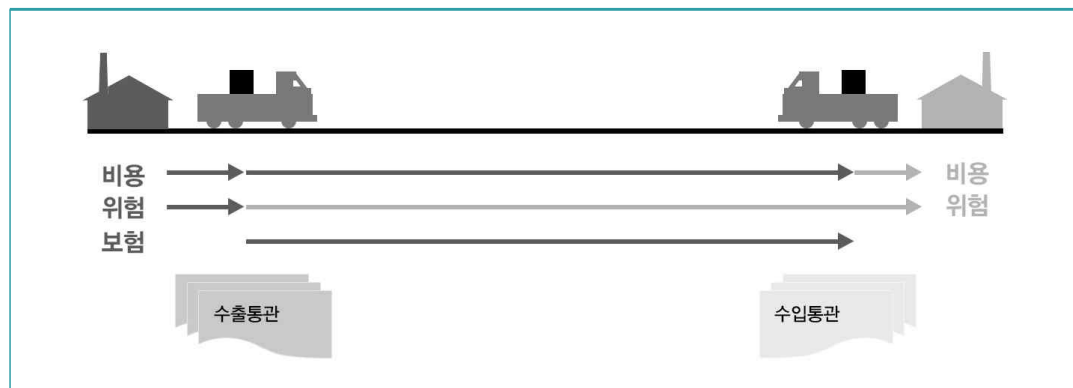
3. **Places (or points) of delivery and destination** - In CIP two locations are important: the place or point at which the goods are delivered (for the transfer of risk) and the place or point agreed as the destination of the goods (as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promises to contract for carriage).
4. **Insurance** - The seller must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to at least the point of destination. This may cause difficulty where the destination country requires insurance cover to be purchased locally: in this case the parties should consider selling and buying under CPT. The buyer should also note that under the CIP Incoterms®2020 rule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extensive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A) or similar clause, rather than with the more limited cover under Institute Cargo Clauses (C). It is however, still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on a lower level of cover.
5.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of delivery with precision**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both places, or indeed points within those places,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of sale.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if any) of delivery as precisely as possible is important to cater for the common situation where several carriers are engaged, each for different legs of the transit from delivery to destination. Where this happens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lace or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transfer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transfer at a later stage (e.g. at a sea or river port or at an airport), or indeed an earlier one (e.g. an inland point some way away from a sea or river 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and to carefully think through the consequences of so doing in case the goods are lost or damaged.
6. **Identifying the destination as precisely as possible** -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of sa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is is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and insurance and this is the point to which the costs of carriage and insurance fall on the seller.

7.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8. **Costs of unloading at destination** -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9. **Export/import clearance** - CI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or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IP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IP(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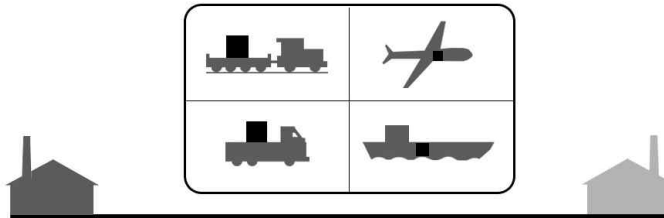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 의미한다.

- ✓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 ✓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 ✓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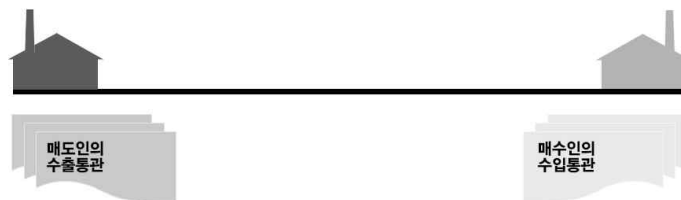
물품이 이러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되면, 매도인은 그 물품이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명시된 수량 또는 그 전량이 도착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로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항구인) 사우샘프턴이나 (항구가 아닌) 윈체스터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항구가 아닌)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인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고 매도인은 사우샘프턴이나 윈체스터로 향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인도장소(또는 인도지점)와 목적지** - CIP에서는 두 곳이 중요하다. 물품이 (위험이전을 위하여) 인도되는 장소 또는 지점이 그 하나이고, 물품의 목적지로서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이 다른 하나이다(매도인은 이 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이다).
4. **보험** - 매도인은 또한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CPT로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인코텀즈 2020 CIP 하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에 의한 제한적인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정확한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두 장소 (인도장소 및 목적지) 또는 그러한 두 장소 내의 실제 지점들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인도장소나 인도지점(있는 경우)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하여 인도지부터 목적지까지 사이에 각자 상이한 운송구간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특정한 인도장소나 인도지점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본 규칙이 규정하는] 보충적 입장은,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하여 매수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서 제1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 후의 어느 단계에서 (예컨대 바다나 강의 항구로부터 멀리 있는 내륙의 어느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되길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고 물품이 실제로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6. **가급적 정확한 목적지 지정** -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지점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보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7.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 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8. **목적지의 양하비용** -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상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9. **수출/수입 통관** - CIP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t the point within that place.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지정목적지 내의 지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customary manner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carriage of the type of goods sold.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항로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지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 및 지정목적지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Unless otherwise agreed or customary in the particular trad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cost cargo insurance complying with the cover provided by Clauses (A)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as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entitle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 at the buyer's cost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unless such cover is already included with the cargo insurance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10% (i.e. 110%) and shall b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insurance shall cover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set out in A2 to at leas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r any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Moreo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requested by the buyer under A5.

▶ A5 보험

특정한 거래에서 다른 합의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당해 운송 수단에 적절한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A-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그밖에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한 담보조건과 같은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바로 위의 단락에 규정된 적하보험에서 그러한 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은 물품에 관하여 A2에 규정된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까지 부보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또는 그 밖의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5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s]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and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If agreed or customary, the document must also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an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A6 인도/운송서류

관행이 있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A4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한다.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서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해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ranspor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the costs of insurance resulting from A5;
- g)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h)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buyer's request under A5 and B5;
- 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g)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적재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관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A5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 g)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h)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B5 하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 e)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dispatch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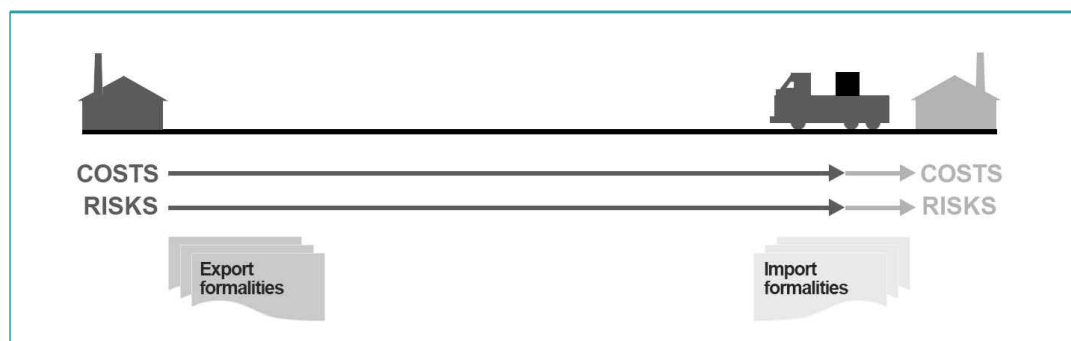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DAP | Delivered at Place

■ 2022, 2023 기출

■ DAP(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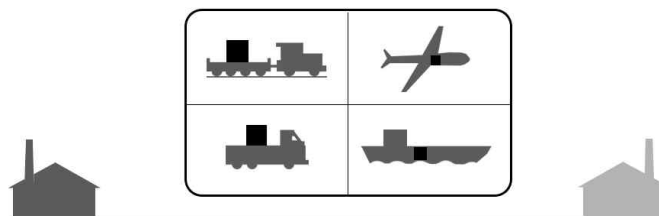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and transfers risk-to the buyer

- ✓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 ✓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 ✓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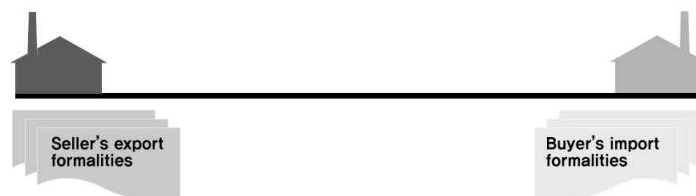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n this Incoterms® rule, therefore, delivery and arrival at destination are the same.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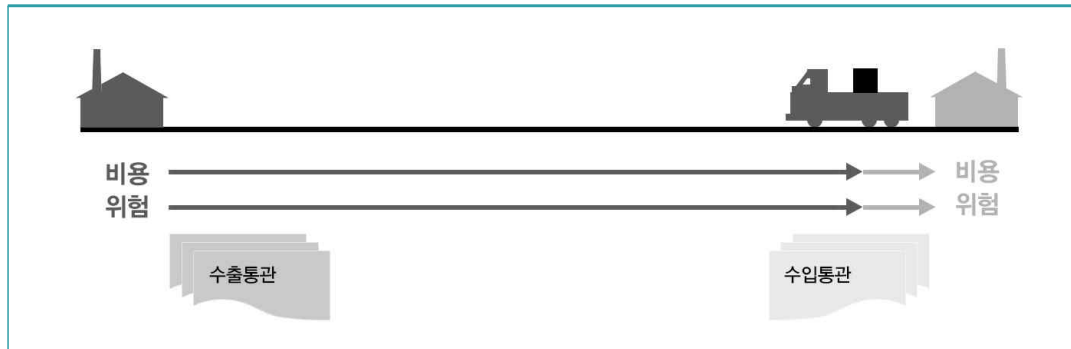


3.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delivery/destination precisely**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the destination place or point as clearly as possible and this for several reasons. First,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to the buyer at that point of delivery/destination-and it is best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to be clear about the point at which that critical transfer happens. Secondly, the costs before that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 costs after that place or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Thirdly,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agreed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If it fails to do so, the seller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Incoterms® DAP rule and will be liable to the buyer for any ensuing loss. Thus, for example, the seller would be responsible for any additional costs levied by the carrier to the buyer for any additional on-carriage.
4.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5. **Unloading costs** - The seller is not required to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ation. However,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livery/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6. **Export/import clearance** - DA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post-delivery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As a result, if the buyer fails to organise clearance, the goods will be held up at a port or inland terminal in the destination country. Who bears the risk of any loss that might occur while the goods are thus held up at the port of entry in the destination country? The answer is the buyer: delivery will not have occurred yet, B3(a) ensuring tha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with the buyer until transit to a named inland point can be resumed. If, in order to avoid this scenario, the parties inten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tax and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the parties might consider using DDP.



DAP | 도착지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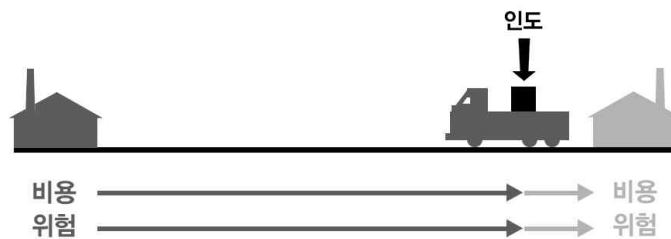
■ DAP(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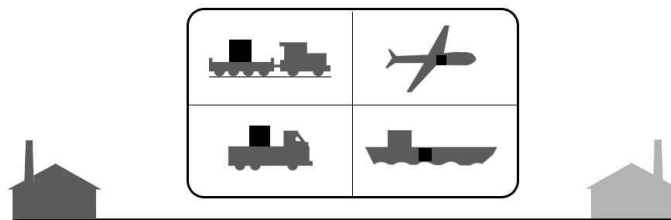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도착지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의미한다.

-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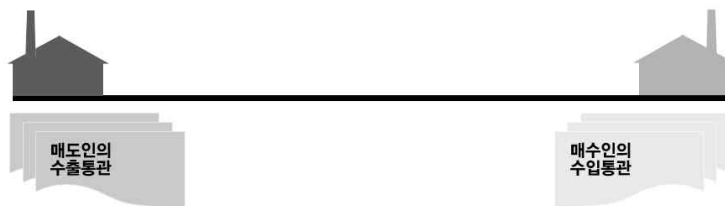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가급적 명확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그러한 인도/목적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러한 결정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그러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셋째,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인코텀즈 DAP 규칙상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은 추가적인 후속운송(on-carriage)을 위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 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양하비용** -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상 인도장소/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6. **수출/수입통관** - DAP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인도 후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에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나 내륙터미널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이 목적지 국가의 입국항구(port of entry)에 묶여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멸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답은 매수인이다. 즉 아직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고, B3(a)는 내륙의 지정지점으로서의 통과가 재개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관세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DDP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Deliver/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출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transport document under A6;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and any transit clearance under A7(a); and
- 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7(b);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e)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c)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e)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b) 지정목적지에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e)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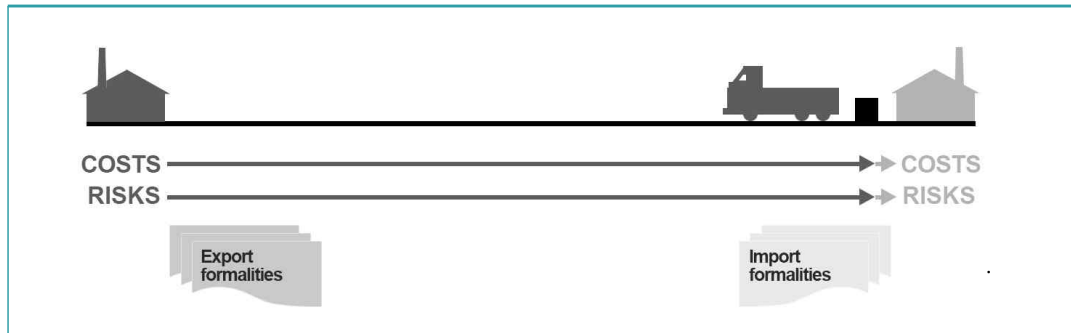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2020, 2023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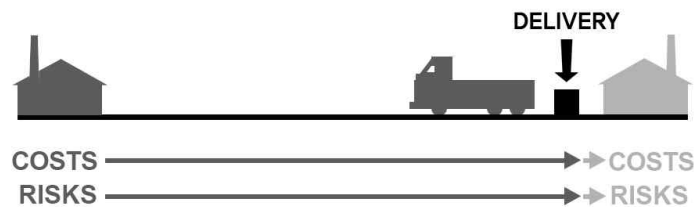
■ DPU(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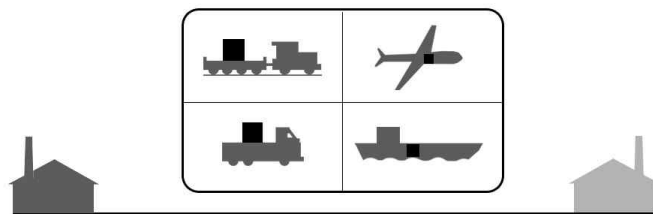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and transfer risk- to the buyer

- ✓ when the goods,
- ✓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 ✓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 at a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 ✓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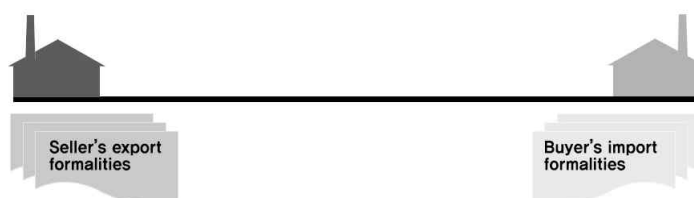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 this Incoterms® rule, therefore, the delivery and arrival at destination are the same. DPU is the only Incoterms® rule that requires the seller to unload goods at destination. The seller should therefore ensure that it is in a position to organise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Should the parties intend the seller not to bear the risk and cost of unloading, the DPU rule should be avoided and DAP should be used instead.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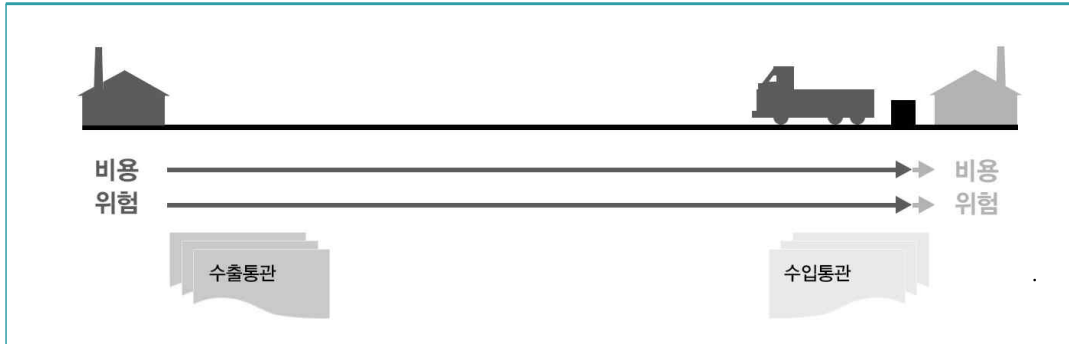


3.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precisely**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the destination place or point as clearly as possible and this for several reasons. First,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to the buyer at that point of delivery/destination-and it is best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to be clear about the point at which that critical transfer happens. Secondly, the costs before that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 costs after that place or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Thirdly,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agreed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If it fails to do so, the seller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rule and will be liable to the buyer for any ensuing loss. The seller would, for example, be responsible for any additional costs levied by the carrier to the buyer for any additional on-carriage.
4.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5. **Export/import clearance** - DPU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post-delivery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As a result, if the buyer fails to organise import clearance, the goods will be held up at a port or inland terminal in the destination country. Who bears the risk of any loss that might occur while the goods are thus held up at the port of entry in the destination country? The answer is the buyer: delivery will not have occurred yet, B3(a) ensuring tha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with the buyer until transit to a named inland point can be resumed. If, in order to avoid this scenario, the parties inten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tax and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the parties might consider using DDP.



DPU | 도착지양하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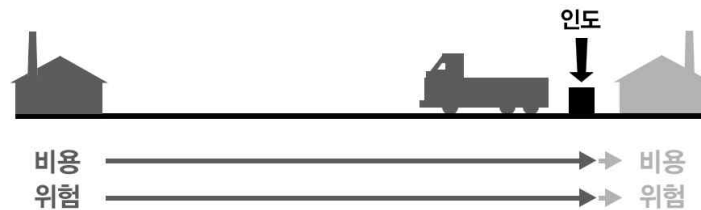
■ DPU(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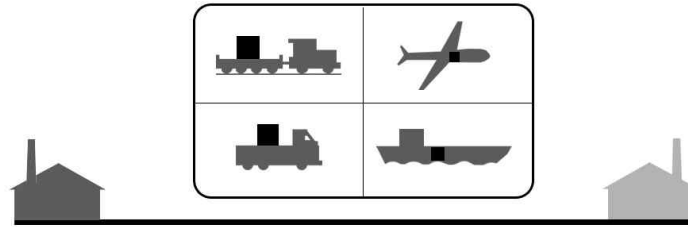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 의미한다.

- ✓ 물품이
- ✓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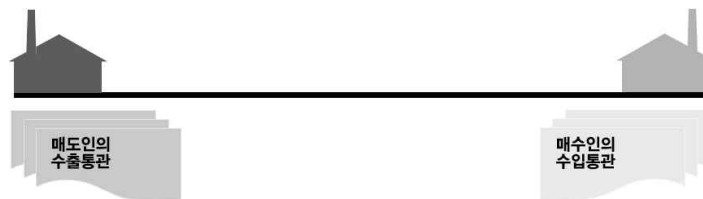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이 그러한 지정장소에서 양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가급적 명확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그러한 인도/목적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러한 결정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그러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셋째,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본 규칙상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은 추가적인 후속운송(on-carriage)을 위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 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연속 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출/수입통관** - DPU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인도 후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에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나 내륙터미널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이 목적지 국가의 입국항구 (port of entry)나 내륙터미널에 묶여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멸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답은 매수인이다. 즉 아직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고, B3(a)는 내륙의 지정지점으로의 통과가 재개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관세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DDP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i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must then deliver them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document provided under A6.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허가
- 수출/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과 통과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과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s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s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unloaded and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transport document under A6;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and any transit clearance under A7(a); and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양하되어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b)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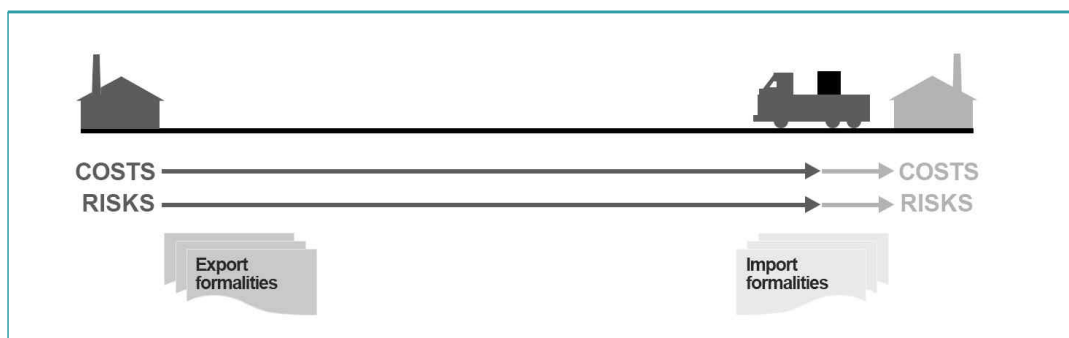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DDP | Delivered Duty P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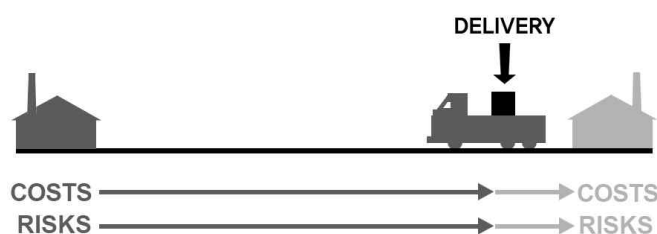
■ 2021 기출

■ DDP(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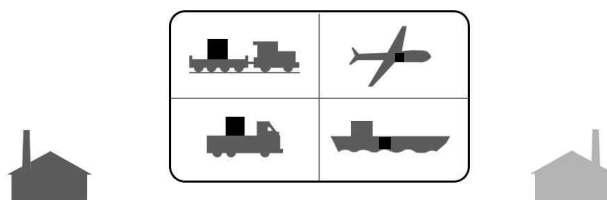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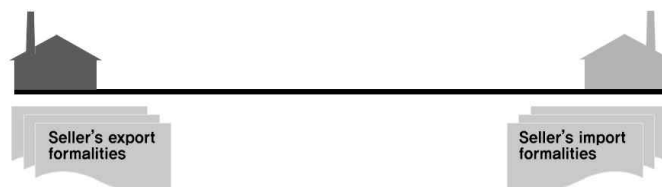
- ✓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 cleared for import,
- ✓ ready for unloading,
- ✓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n this Incoterms® rule, therefore, delivery and arrival at destination are the same.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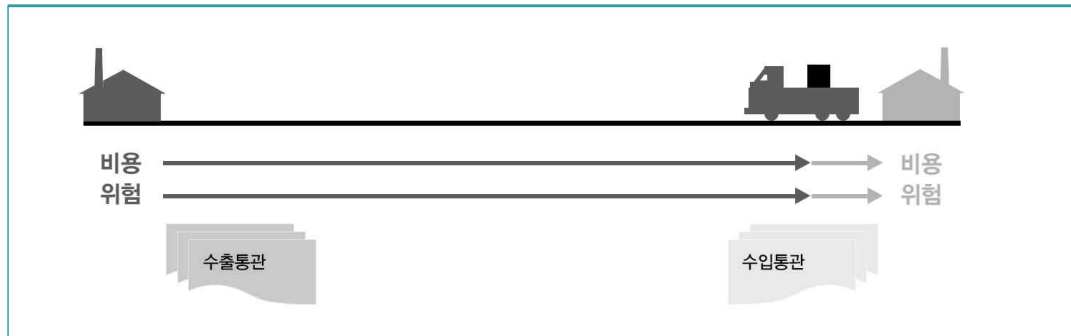


3. **A note of caution to sellers: maximum responsibility** - DDP, with delivery happening at destination and with the seller being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import duty and applicable taxes is the Incoterms® rule imposing on the seller the maximum level of obligation of all eleven Incoterms® rules.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therefore, the rule should be used with care for different reasons as set out in paragraph 7.
4. **Identifying the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precisely**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the destination place or point as clearly as possible and this for several reasons. First,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to the buyer at that point of delivery/destination-and it is best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to be clear about the point at which that critical transfer happens. Secondly, the costs before that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including the costs of import clearance, and the costs after that place or point, other than the costs of impor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Thirdly,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agreed place or point of delivery/destination. If it fails to do so, the seller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Incoterms® rule DDP and will be liable to the buyer for any ensuing loss. Thus, for example, the seller would be responsible for any additional costs levied by the carrier to the buyer for any additional on-carriage.
5.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6. **Unloading costs** -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livery/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7. **Export/import clearance** - As set out in paragraph 3, DD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as well as for import and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customs formalities. Thus if the seller is unable to obtain import clearance and would rather leave that side of things in the buyer's hands in the country of import, then the seller should consider choosing DAP or DPU, under which rules delivery still happens at destination, but with import clearance being left to the buyer. There may be tax implications and this tax may not be recoverable from the buyer: see A9(d).



DDP | 관세지급인도

■ DDP(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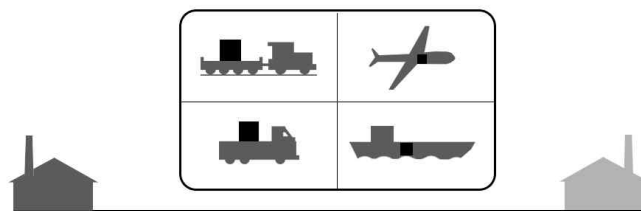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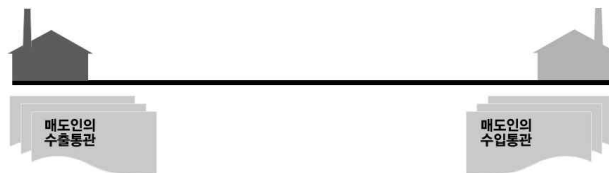
-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 ✓ 수입통관 후
-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 ✓ 양하준비된 상태로
-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매도인을 위한 유의사항: 최대책임** - DDP에서는 인도가 도착지에서 일어나고 매도인이 수입 관세와 해당되는 세금의 납부책임을 지므로 DDP는 11개의 모든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매도인에게 최고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관점에서, 본 규칙은 아래 7 번 단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정확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가급적 명확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그러한 인도/목적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러한 결정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수입통관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비용을 제외한 그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셋째,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인코텀즈 DDP 규칙상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은 추가적인 후속운송(on-carriage)을 위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5.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6. **양하비용** -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인도장소/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7. **수출/수입통관** - 위의 3번 단락에서 보듯이, DDP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고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인도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일어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DAP나 DPU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문제가 개재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 A9(d)를 보라.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document provided under A6.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 transit and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Export/import clearance

B7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transit/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transit and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B7 수출/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 통과 및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transport document under A6;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transit and import clearance under A7; and

- 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 c)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c)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 통과 및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e)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B10 통지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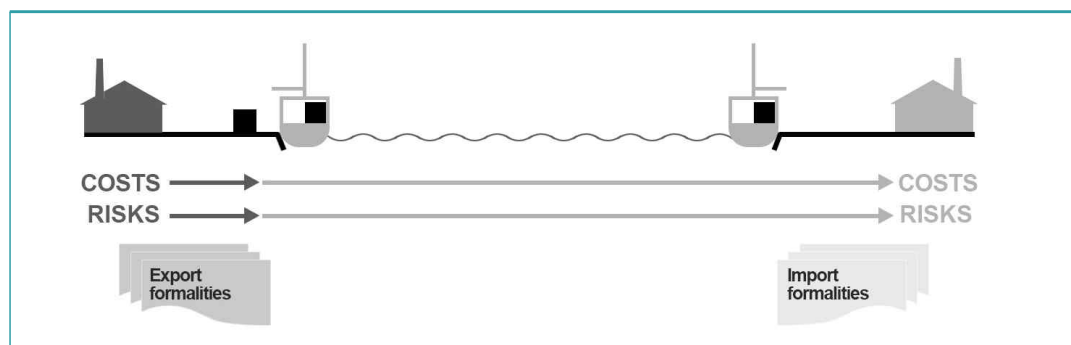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FAS | Free Alongside Ship

■ 2022 기출

■ FAS(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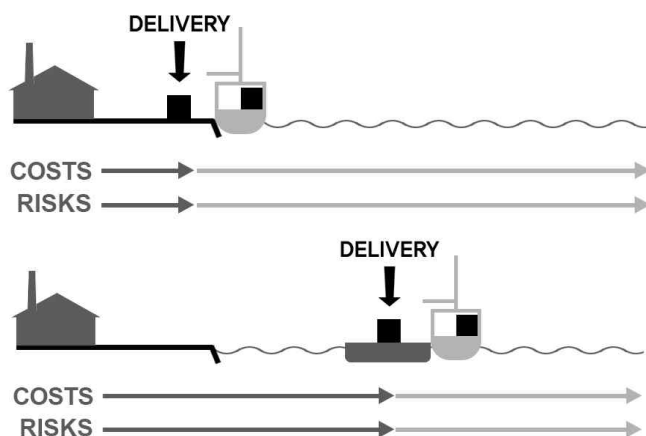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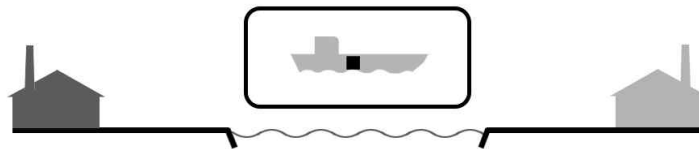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ship (e.g. on a quay or a barge)
- ✓ nominated by the buyer
- ✓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 ✓ or when the seller procures goods already so deli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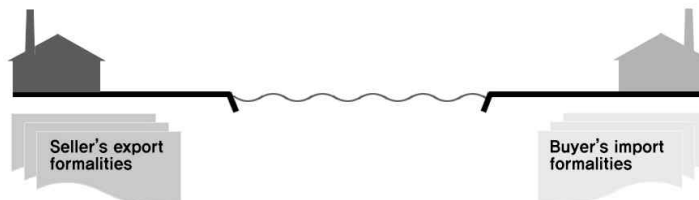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re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 goods alongside a vessel. Thus, the FAS rule is not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alongside the vessel, for exampl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Where this is the case, parties should consider using the FCA rule rather than the FAS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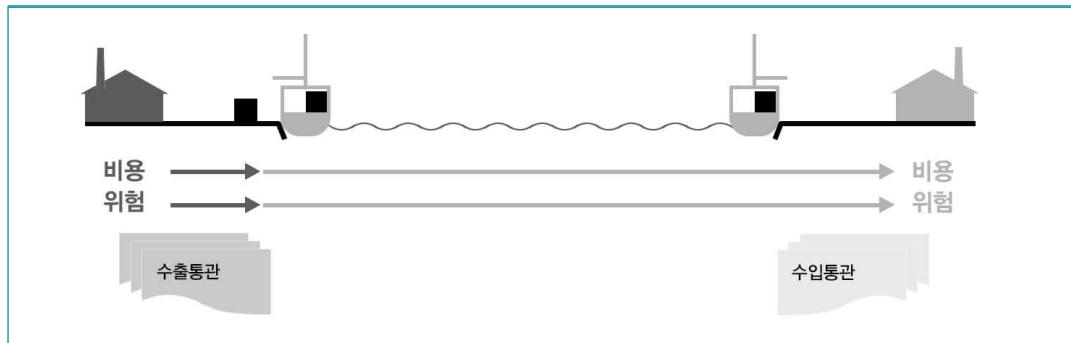


3. **Identifying the loading point precisely**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loading point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where the goods are to be transferred from the quay or barge to the ship,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se costs and associated handling charges may vary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port.
4.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alongside the ship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5. **Export/import clearance** - FAS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FAS | 선측인도

■ FAS(지정선적항 기입) Incoterm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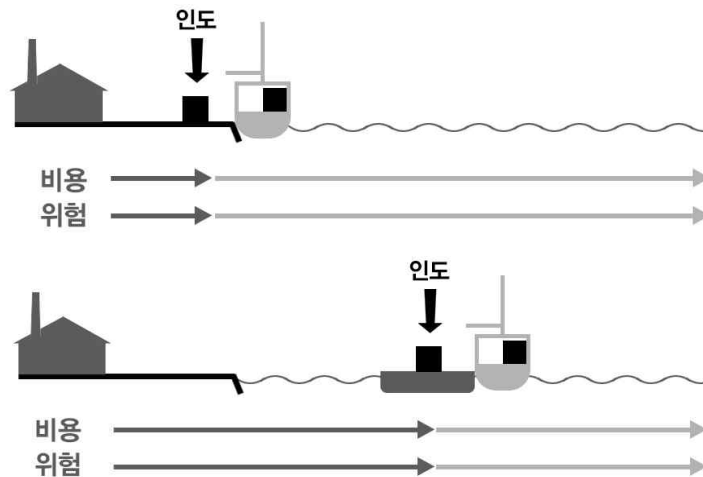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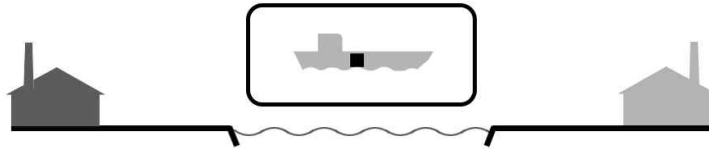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선측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정선적항에서
-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 ✓ 선측에 (예컨대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 ✓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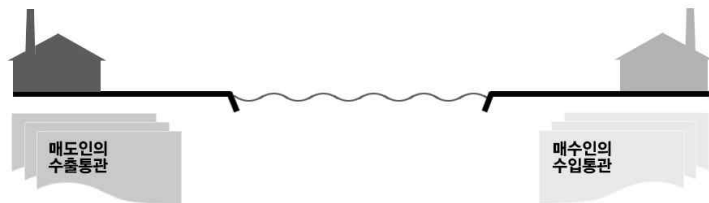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둬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FAS 규칙은 물품이 선측에 놓이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예컨대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FAS 규칙 대신에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확한 적재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부두나 바지(barge)로부터 선박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러한 비용과 그와 관련된 처리비용(handling charges)은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서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출/수입통관** - FAS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alongside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and

4.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with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에

또는

2. B10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에

또는

3. 그러한 시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에

그리고

4. 그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특정한 적재지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선적항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fails to arrive on time to enable the seller to comply with A2,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dat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 or, if no such dat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매도인이 A2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에 따라 선택한 일자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Carriage

B4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A4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Insurance

A5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Unless such proof is a transport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of delivery provided under A6.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 (i) the buyer has failed to give notice under B10, or
 - (ii)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arrive on time,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vessel has fai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Notices

B10

The buyer must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of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e vessel name, loading point and, if any, the selected delivery date within the agreed period.

▶ A10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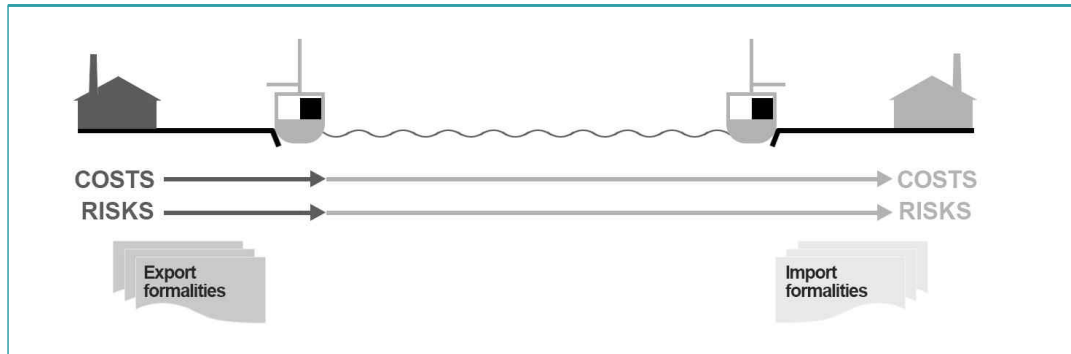
▶ B10 통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관련 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FOB | Free On Board

■ 2021, 2023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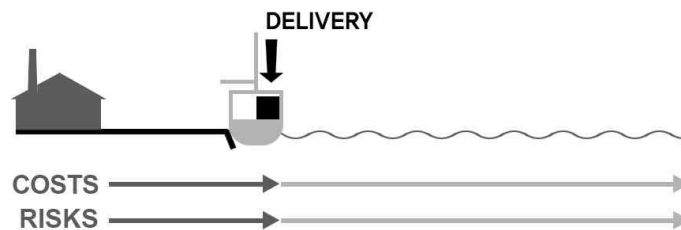
■ FOB(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20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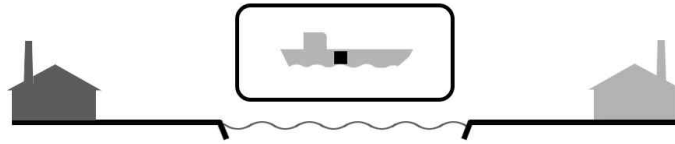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 on board the vessel
- ✓ nominated by the buyer
- ✓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 ✓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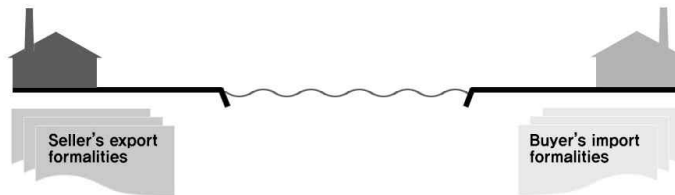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re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 goods on board a vessel. Thus, the FOB rule is not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Where this is the case, parties should consider using the FCA rule rather than the FOB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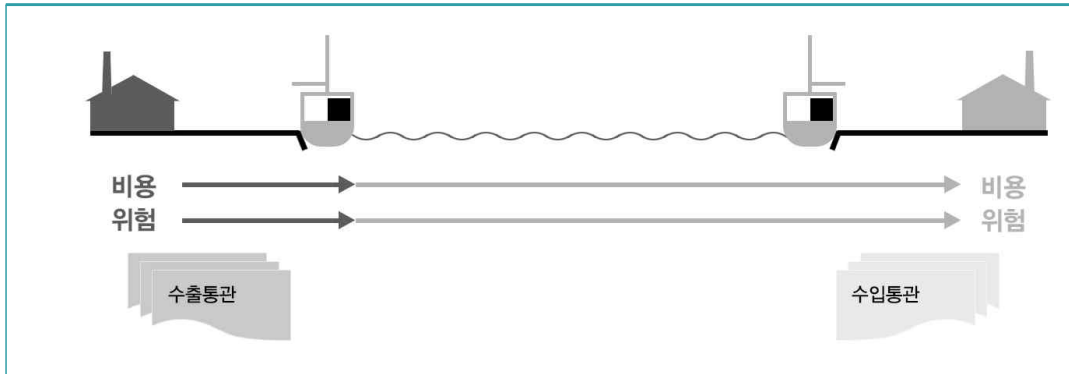


3.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4. **Export/import clearance** - 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FOB | 본선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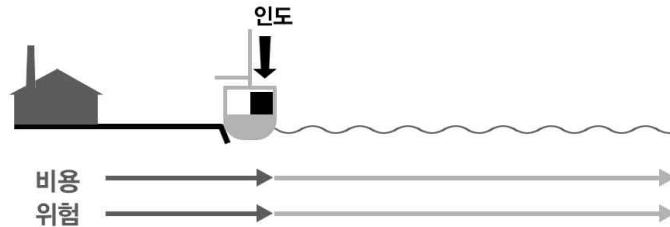
■ FOB(지정선적항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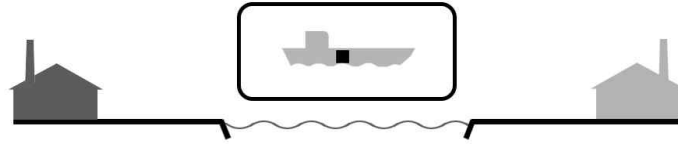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정선적항에서
- ✓ 매수인이 지정한
- ✓ 선박에 적재함
- ✓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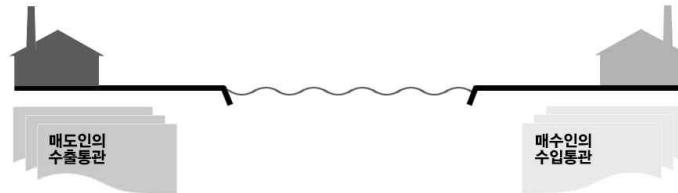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FOB 규칙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예컨대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FOB 규칙 대신에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매도인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한다" (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수출/수입통관 - FOB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and
4.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with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에
또는
2. B10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에
또는
3. 그러한 시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에
그리고
4. 그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특정한 적재지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선적항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B2 인도인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fails to arrive on time to enable the seller to comply with A2,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dat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
 or, if no such dat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을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매도인이 A2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에 따라 선택한 일자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Carriage

B4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A4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Unless such proof is a transport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of delivery provided under A6.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 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 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 (i) the buyer has failed to give notice under B10, or
- (ii)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arrive on time,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vessel has failed to take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Notices

B10

security requirements, the vessel name, loading point and, if any, the selected delivery date within the agreed period.

▶ A10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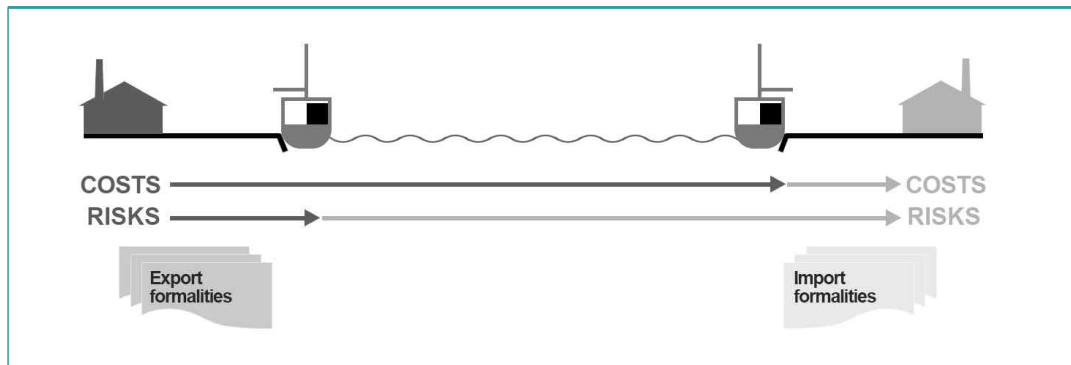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B10 통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관련 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CFR | Cost and Fr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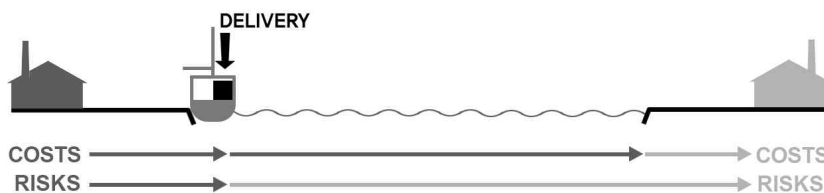
■ CFR(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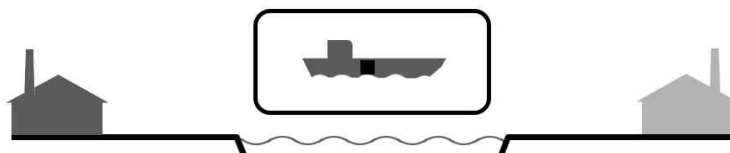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on board the vessel
-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such that the seller is taken to have performed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ther or not the goods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in sound condition, in the stated quantity or, indeed, at all. In CFR, the seller owe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purchase insurance cover: the buyer would be well-advised therefore to purchase some cover for it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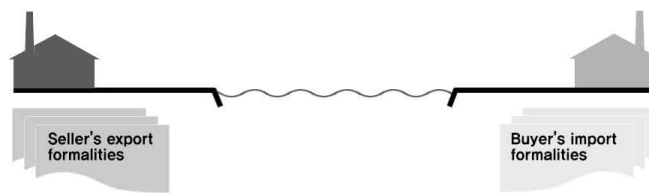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to be used, which will commonly be the cas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the appropriate rule to use is CPT rather than CFR.



3.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4. **Ports of delivery and destination** - In CFR, two ports are important: the port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on board the vessel and the port agreed as the destination of the goods.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buy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at the shipment port or by procuring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However,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agreed destination. Thus, for example, goods are placed on board a vessel in Shanghai (which is a port) for carriage to Southampton (also a port). Delivery here happen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in Shanghai, with risk transferring to the buyer at that time; and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f carriage from Shanghai to Southampton.
5. **Must the shipment port be named?** -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If the shipment por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buyer, as it may be, for example, where the buyer wishes to ascertain that the freight element of the price is reasonabl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i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6. **Identifying the destination point at the discharge port**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r contracts of carriage that cover(s) the transit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named port or to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ort where such a point has been agreed in the contract of sale.
7. **Multiple carriers** - It is possible that carriage is effected through several carriers for different legs of the sea transport, for example, first by a carrier operating a feeder vessel from Hong Kong to Shanghai, and then onto an ocean vessel from Shanghai to Southampton. The question which arises here is whether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at Hong Kong or at Shanghai: where does delivery take place? The parties may well have agreed this in the sale contract itself. Where,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transfer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i.e. Hong Kong, thus increasing the period during which the buyer incurs the risk of loss or damage. Should the parties w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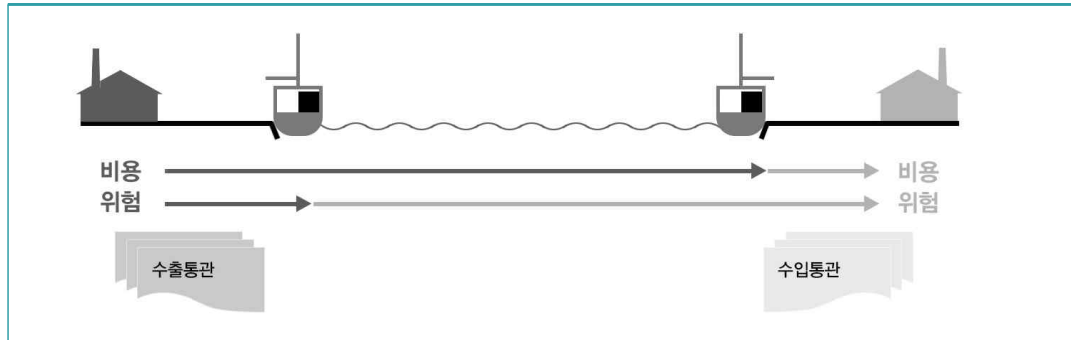
the risk to transfer at a later stage (here, Shanghai)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8. **Unloading costs** -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specified point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9. **Export/import clearance** - 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FR | 운임포함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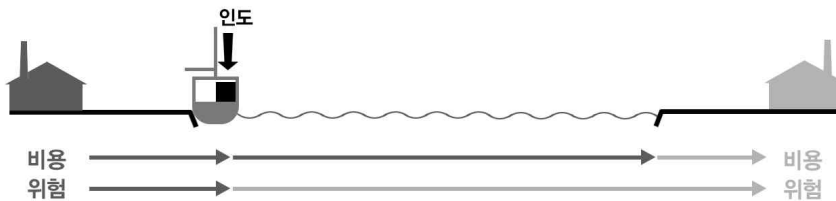
■ CFR(지정목적항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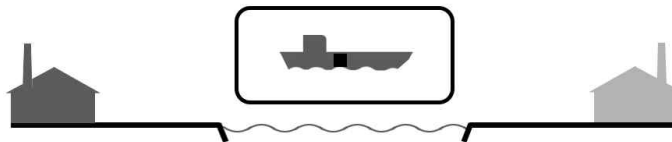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선박에 적재함
-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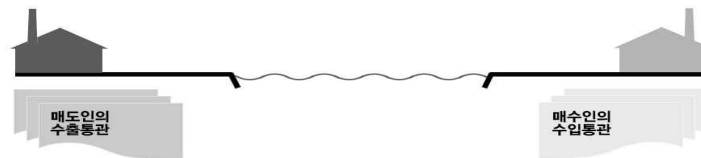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명시된 수량의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는지를 불문하고 또는 사실 물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더라도 그의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CFR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보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스스로 부보하는 것이 좋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하기 적절한 규칙은 CFR이 아니라 CPT이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 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인도항(port of delivery)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 - CFR에서는 두 항구가 중요하다.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어 인도되는 항구와 물품의 목적항으로 합의된 항구가 그것이다.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됨으로써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따라서 예컨대 물품은 (항구인) 사우샘프턴까지 운송을 위하여 (항구인) 상하이에서 선박에 적재된다. 그러면 물품이 상하이에서 적재된 때 여기서 인도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으로 향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선적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가?** -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할 것이지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인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운임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하듯이 선적항이 특히 매수인의 관심사한인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선적항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다.
6. **양륙항 내 목적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으로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복수의 운송인** - 예컨대 먼저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피더선(feeder vessel)을 운항 하는 운송인이 담당하고 이어서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항해선박(ocean vessel)이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상이한 해상운송구간을 각기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이 운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과연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홍콩에서 이전하는지 아니면 상하이에서 이전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즉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이를 잘 합의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 규칙이 규정하는] 보충적 입장은,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즉 홍콩에서 이전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 뒤의 어느 단계에서 (여기서는 상하이)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8. **양하비용** -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9. **수출/수입통관** - CFR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당해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ort.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vessel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the type of goods sold.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A4 운송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A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for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port of destination and, unless otherwise agree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 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그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서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7 수출/수입통관**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rt of discharge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g)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including lighterage and wharfage charge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e)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f)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선적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양륙항의 양하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e)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f)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선적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shipp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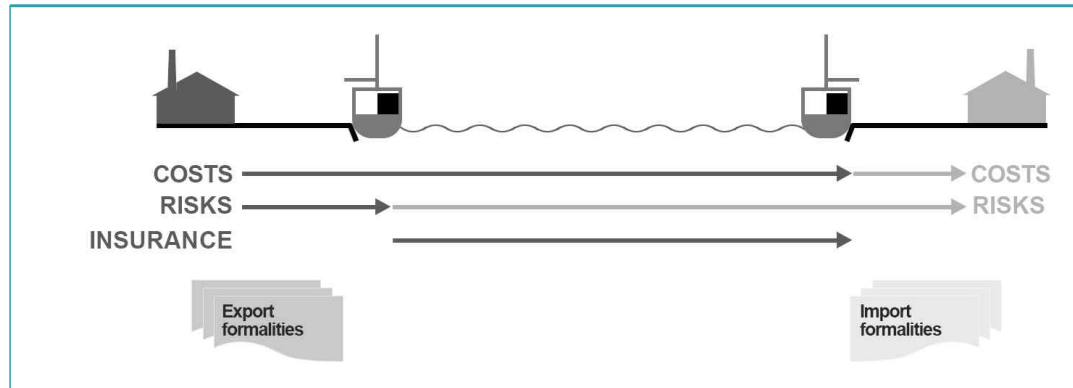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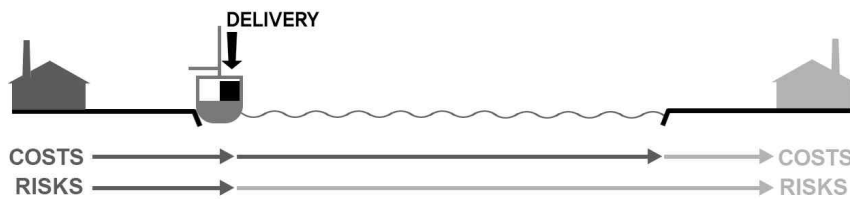
■ CIF(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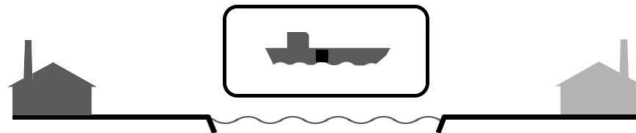
1. **Delivery and risk** -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on board the vessel
-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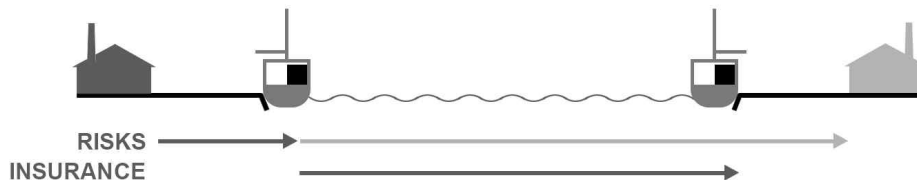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such that the seller is taken to have performed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ther or not the goods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in sound condition, in the stated quantity or, indeed, at all.

2. **Mode of transport** -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to be used, which will commonly be the cas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the appropriate rule to use is CIP rather than C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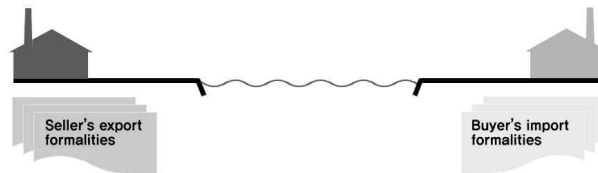


3.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4. **Ports of delivery and destination** - In CIF, two ports are important: the port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on board the vessel and the port agreed as the destination of the goods.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buy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at the shipment port or by procuring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However,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agreed destination. Thus, for example, goods are placed on board a vessel in Shanghai (which is a port) for carriage to Southampton (also a port). Delivery here happen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in Shanghai, with risk transferring to the buyer at that time; and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f carriage from Shanghai to Southampton.
5. **Must the shipment port be named?** -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If the shipment por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buyer, as it may be, for example, where the buyer wishes to ascertain that the freight or the insurance element of the price is reasonabl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i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6. **Identifying the destination point at the discharge port**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must make a contract or contracts of carriage that cover the transit of the goods from delivery to the named port or to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ort where such a point has been agreed in the contract of sale.
7. **Multiple carriers** - It is possible that carriage is effected through several carriers for different legs of the sea transport, for example, first by a carrier operating a feeder vessel from Hong Kong to Shanghai, and then onto an ocean vessel from Shanghai to Southampton. The question which arises here is whether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at Hong Kong or at Shanghai: where does delivery take place? The parties may well have agreed this in the sale contract itself. Where,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transfer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i.e. Hong Kong, thus increasing the period during which the buyer incurs the risk of loss or damage.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transfer at a later stage (here, Shanghai)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8. **Insurance** - The seller must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port of shipment to at least the port of destination. This may cause difficulty where the destination country requires

insurance cover to be purchased locally: in this case the parties should consider selling and buying under CFR. The buyer should also note that under the CIF Incoterms® 2020 rule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limited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C) or similar clause, rather than with the more extensive cover under Institute Cargo Clauses (A). It is, however, still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on a higher level of c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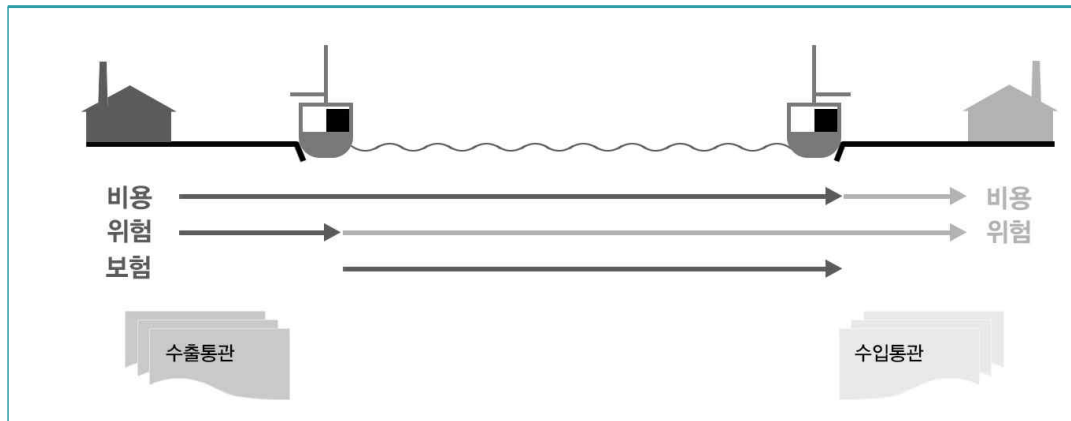


9. **Unloading costs** -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specified point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10. **Export/import clearance** - CIF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IF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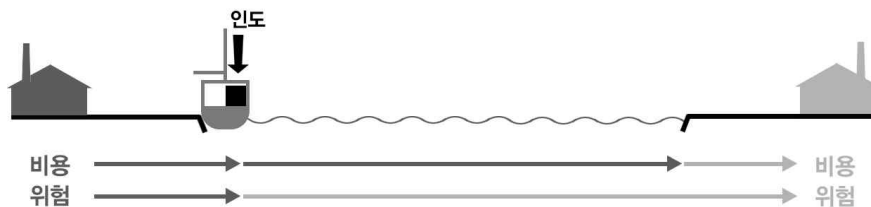
■ CIF(지정목적항 기입) Incoterms® 2020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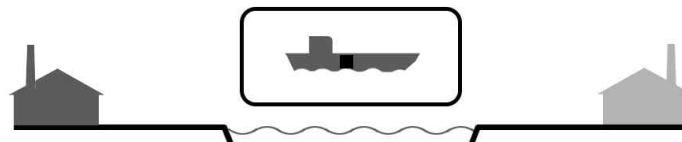
1. **인도와 위험** - “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선박에 적재함
- ▶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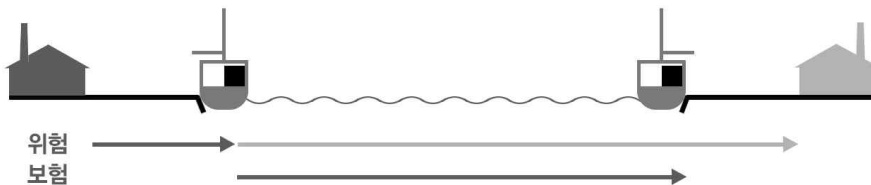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명시된 수량의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는지를 불문하고 또는 사실 물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더라도 그의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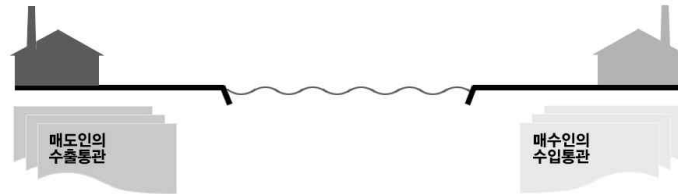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하기 적절한 규칙은 CIF가 아니라 CIP이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 상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 **인도항(port of delivery)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 - CIF에서는 두 항구가 중요하다.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어 인도되는 항구와 물품의 목적항으로 합의된 항구가 그것이다.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됨으로써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물품은 (항구인) 사우샘프턴 까지 운송을 위하여 (항구인) 상하이에서 선박에 적재된다. 그러면 물품이 상하이에서 선적된 때 여기서 인도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으로 향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선적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가?** -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할 것이지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인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운임요소 또는 보험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하듯이 선적항이 특히 매수인의 관심사항인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선적항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6. **양륙항 내 목적지점 지정** - 당사자들은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매매계약에서 그러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까지 운송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복수의 운송인** - 예컨대 먼저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피더선(feeder vessel)을 운항하는 운송인이 담당하고 이어서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항해선박(ocean vessel)이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상이한 해상운송구간을 각기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이 운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과연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홍콩에서 이전하는지 아니면 상하이에서 이전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즉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이를 잘 합의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 규칙이 규정하는] 보충적 입장은,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즉 홍콩에서 이전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 뒤의 어느 단계에서 (여기서는 상하이)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8. **보험** - 매도인은 또한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CFR로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인코텀즈 2020 CIF 하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9. **양하비용** -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10. **수출/수입통관** - CIF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General obligations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General obligations

B1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A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B1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Delivery

A2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Taking delivery

B2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당해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Transfer of risks

A3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Transfer of risks

B3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arriage

A4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ort.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vessel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the type of goods sold.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Carriage

B4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A4 운송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Insurance

A5

Unless otherwise agreed or customary in the particular trad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cost, cargo insurance complying with the cover provided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entitle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 at the buyer's cost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unless such cover is already included with the cargo insurance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10% (i.e. 110%) and shall b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insurance shall cover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set out in A2 to at leas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r any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Moreo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Insurance

B5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requested by the buyer under A5.

A5 보험

특정한 거래에서 다른 합의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로이즈시장협회 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그밖에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것과 같은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단락에 규정된 적하보험에서 그러한 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은 물품에 관하여 A2에 규정된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항까지 부보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그 밖의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5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Delivery/transport document

A6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for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port of destination and, unless otherwise agree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Delivery/transport document

B6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A6 인도/운송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 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그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서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port/import clearance

A7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Export/import clearance

B7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A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Checking/packaging/marking

A8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hecking/packaging/marking

B8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A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llocation of costs

A9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rt of discharge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the costs of insurance resulting from A5;
- g)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h)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Allocation of costs

B9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including lighterage and wharfage charge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buyer's request under A5 and B5;
- 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g)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A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선적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양륙항의 양하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 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A5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 g)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h)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B9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B5 하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 e)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선적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Notices

A10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Notices

B10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shipp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A10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B10 통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rticle-by-Article Text of rules
조항별 규칙조문

A1 General obligations

■ EXW(Ex Works)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A1 일반의무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 송장과 그밖에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B1 General obligations

■ EXW(Ex Work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the buy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A2 Delivery

■ EXW(Ex Work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agre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r procur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b)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Delivery is completed either:
 - a) If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when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
 - b) In any other cas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on the

A2 인도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둬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지정인도장소 내에 합의된 특정한 지점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이용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그 지정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
또는
2. B10(b)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
또는,
3. 그러한 시기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
인도는 다음의 시점에 완료된다.
 - a)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또는
 - b) 그 밖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seller's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지정인도장소 내에 매수인이 B10(d)에 따라 통지한 특정한 지점이 없고 또한 이용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must then deliver them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alongside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에
또는
2. B10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에
또는
3. 그러한 시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and

4.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with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1. on the agreed date
or
2. at the time within the agreed period notified by the buyer under B10
or,
3. if no such time is notified, then at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and
4.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with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에
그리고

4. 그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특정한 적재지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선적항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합의된 기일에
또는
2. B10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에
또는
3. 그러한 시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에
그리고
4. 그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특정한 적재지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선적항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당해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B2 Taking delivery

■ EXW(Ex Works)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notice given under A10.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t the point within that place.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t the point within that place.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당해 항구에서 관행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B2 인도의 수령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고 A10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지정목적지 내의 지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지정목적지 내의 지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A3 Transfer of risks

■ EXW(Ex Wor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 FCA(Free Carrier)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A3 위험이전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3.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3.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CFR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한다.

B3 Transfer of risks

■ EXW(Ex Works)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CA(Free Carrier)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nominate a carrier or another person under A2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a) fails to take the goods into its charge,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tim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b); or, if no such tim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B3 위험이전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 또는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A2상의 운송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B10(a)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안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b)에 따라 선택한 시기부터 또는 그러한 시기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 b)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fails to arrive on time to enable the seller to comply with A2,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dat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 or, if no such dat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OB(Free on Board)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 a)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or
- b)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fails to arrive on time to enable the seller to comply with A2,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매도인이 A2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에 따라 선택한 일자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 a)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매도인이 A2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 (i) from the agreed dat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ate,
- (ii) from the date selected by the buyer under B10, or, if no such date has been notified,
- (iii) from the end of any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i)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 (ii) 매수인이 B10에 따라 선택한 일자 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 (iii)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A4 Carriage

■ EXW(Ex Works)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 FCA(Free Carri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r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A4 운송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customary manner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carriage of the type of goods sold.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customary manner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carriage of the type of goods sold.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항로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 및 지정목적지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항로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 및 지정목적지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If agre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cost.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ort. The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운송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vessel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the type of goods sold.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ort. The contract of carriage must be made on usual terms at the seller's cost and provide for carriage by the usual route in a vessel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the type of goods sold.

The seller must comply with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for transport to the destination.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장소로부터,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요구되는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4 Carriage

■ EXW(Ex Works)

It is up to the buyer to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lace of delivery.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lace of delivery,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4 운송

■ EXW(공장인도)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이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 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4.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다만 A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A5 Insurance

■ EXW(Ex Works)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FCA(Free Carri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Unless otherwise agreed or customary in the particular trad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cost, cargo insurance complying with the cover provided by Clauses (A)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as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The

A5 보험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특정한 거래에서 다른 합의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당해 운송수단에 적절한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A-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entitle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 at the buyer's cost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unless such cover is already included with the cargo insurance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10% (i.e. 110%) and shall b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insurance shall cover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set out in A2 to at leas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r any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Moreo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 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 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그밖에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한 담보조건과 같은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바로 위의 단락에 규정된 적하보험에서 그러한 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은 물품에 관하여 A2에 규정된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까지 부보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그 밖의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Unless otherwise agreed or customary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특정한 거래에서 다른 합의나 관행이 없는

in the particular trad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cost, cargo insurance complying with the cover provided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entitle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 at the buyer's cost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 (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unless such cover is already included with the cargo insurance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10% (i.e. 110%) and shall b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insurance shall cover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set out in A2 to at leas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r any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Moreo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 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그밖에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것과 같은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바로 위의 단락에 규정된 적하보험에서 그러한 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은 물품에 관하여 A2에 규정된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항까지 부보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서 그 밖의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5 Insurance

■ EXW(Ex Works)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FCA(Free Carrier)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requested by the buyer under A5.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B5 보험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5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제공하여야 한다.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FOB(Free on Boar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CFR(운임도확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requested by the buyer under A5.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5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6 Delivery/transport document

■ EXW(Ex Works)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Where the buyer has instructed the carrier to issue to the seller a transport document under B6, the seller must provide any such document to the buyer.

■ CPT(Carriage Paid To)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s]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and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If agreed or customary, the document must also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an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A6 인도/운송서류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관행이 있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A4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한다.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s]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4.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and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If agreed or customary, the document must also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an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관행이 있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A4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한다.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any document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over the goods.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Unless such proof is a transport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cost, with the usual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Unless such proof is a transport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assistan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for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port of destination and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unless otherwise agree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for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This transport document must cover the contract goods, be dated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shipment, enable the buyer to claim the goods from the carrier at the port of destination and, unless otherwise agreed, enable the buyer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by the transfer of the document to a subsequent buyer or by notification to the carrier.

When such a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and in several originals, a full set of originals must be presented to the buyer.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그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그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6 Delivery / transport document■ **EXW(Ex Works)**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the buyer must instruct the carrier to issue to the seller at the buyer's cost and risk,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such as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must accept the document provided under A6.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must accept the document provided under A6.

B6 인도/운송서류■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일치하게 인도되었다는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must accept the document provided under A6.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of delivery provided under A6.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accept the proof of delivery provided under A6.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must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 provided under A6 if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A7 Export/import clearance

■ EXW(Ex Work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 transit /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 / transit /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transit /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FCA(Free Carrier)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 / 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 /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A7 수출/수입통관

■ EXW(공장인도)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FCA(운송인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CPT(Carriage Paid To)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 and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 / 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 /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 and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 / 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 /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 CPT(운송비지급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 /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 /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DAP(Delivered at Place)

a)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import.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a)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 DAP(도착지인도)

a)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허가
- 수출/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a)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허가
- 수출/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import.

■ DDP(Delivered Duty Paid)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 transit and 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transit /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FAS(Free Alongside Ship)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FAS(선측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FOB(Free on Board)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 CFR(Cost and Freight)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 export, such as: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 FOB(본선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a)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export, such as:

- ex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Assistance with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any country of transit or the country of import.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b) 수입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7 Export/import clearance

■ EXW(Ex Works)

Where applicable, it is up to the buyer to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transit/import, such as: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 transit /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7 수출/수입통관

■ EXW(공장인도)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이다.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통과/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FCA(Free Carrier)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 / 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CPT(Carriage Paid To)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 /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FCA(운송인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 /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CPT(운송비지급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pre-shipment inspection;
- and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DAP(Delivered at Place)

a) Assistance with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그 밖의 공적 인가

■ DAP(도착지인도)

a) 수출통관과 통과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과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a) Assistance with export and transi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and any country of transit (other than the country of im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DDP(Delivered Duty Paid)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transit/import clearanc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countries of export/transit/import, such as: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DPU(도착지양하인도)

a) 수출통관과 통과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과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DDP(관세지급인도)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출국/통과국/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과/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 export/transit/import licence;
-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transit and impor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FAS(Free Alongside Ship)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FOB(Free on Board)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 수출/통과/수입허가
- 수출, 통과 및 수입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FAS(선측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그 밖의 공적 인가

■ FOB(본선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CFR(Cost and Freight)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any transit;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a) Assistance with ex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assist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cost in obtaining any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lated to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ies, including security requirements and pre-shipment inspection needed by the country of export.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CFR(운임포함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과를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전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b) Import clearance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formalities required by any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untry of import, such as:

- import licence and any licence required for transit;
- security clearance for import and
- any transit: pre-shipment inspection: and
- any other official authorisation.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 수입과 통관을 위한 보안통관
- 선적전검사 및
- 그 밖의 공적 인가

A8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EXW(Ex Works)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A8 점검/포장/하인표시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at its own co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r marking requirements.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8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 EXW(Ex Works)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FCA(Free Carrier)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B8 점검/포장/하인표시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FOB**(Free on Board)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9 Allocation of costs

■ EXW(Ex Works)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transpor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9 비용분담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물품적재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g)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ranspor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the costs of insurance resulting from A5;
- g)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f) 해당되는 경우에 A7(2)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g)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적재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c)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f) A5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g)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h)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 / transport document under A6;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and any transit clearance under A7(a), and
- 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a).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unloaded and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 / transport document under A6;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and any transit clearance under A7(a); and

- h)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c)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e)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양하되어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그러나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 및 통과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a).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but only if those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 / transport document under A6;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transit and import clearance under A7; and
- 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and B7.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d)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그 물품의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 c) A6에 따라 인도/운송서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 통과 및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e) B5 및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d)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rt of discharge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d)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선적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양륙항의 양하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g)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transport-related security costs;
- c)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rt of discharge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transit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e) the costs of providing the usual proof to the buyer under A6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 f) the costs of insurance resulting from A5;
- g)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clearance under A7(a); and
- h)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7(a).

- f)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물품선적비용과 운송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c) 합의된 양륙항의 양하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d)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 e)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f) A5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 g)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h)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B9 Allocation of costs

■ EXW(Ex Works)

The buyer must:

- a)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reimburse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assistance or information under A4, A5, or A7;
- c) pay, where applicable,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export; and
- d) pay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failing eith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its disposal or to give appropriat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B9 비용분담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A4, A5 및 A7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 c)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 d) 물품이 자신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CA (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i) the buyer fails to nominate a carrier or another person under B10,
or
(ii)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take the goods into its charge,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운송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buyer's request under A5 and B5;
- 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g)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b)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7(b);
- d)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B5 하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 e)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d)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e)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7(b);
-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must pay:

-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 e)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7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 (i) the buyer has failed to give notice under B10, or
 - (ii)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arrive on time,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c) 매수인이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4, A5, A6 and A7(b);
 - c)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d)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either because:
 - (i) the buyer has failed to give notice under B10, or
 - (ii)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under B10 fails to arrive on time, fails to take the goods, or closes for cargo earlier than the tim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B10,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including lighterage and wharfage charge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e)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c) 해당되는 경우에 B7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d)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i)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B10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e)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f)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must pay:

-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under A2,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seller under A9;
- b) the costs of transit,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c) unloading costs including lighterage and wharfage charge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d) the costs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buyer's request under A5 and B5;
- 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5 and A7(b);
- f) where applicable, duties, taxes and any other costs related to transit or import clearance under B7(b); and
- g)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it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10,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nd of the agreed period for 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f)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선적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A5 및 B5 하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 e)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 f)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 g)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선적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A10 Notices

■ EXW(Ex Works)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 FCA(Free Carrier)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has failed to take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 CPT(Carriage Paid To)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 DAP(Delivered at Place)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A10 통지

■ EXW(공장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 DDP(Delivered Duty Paid)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 FAS(Free Alongside Ship)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vessel has fai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 FOB(Free on Board)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eith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or that the vessel has failed to take the goods within the time agreed.

■ CFR(Cost and Freight)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seller must notify the buyer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FOB(본선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사실 또는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B10 Notices

■ EXW(Ex Works)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FCA(Free Carrier)

The buyer must notify the seller of

- the name of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within sufficient time as to enable the seller to deliver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2;
- the selected time, if any,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delivery when the carrier or person nominated will receive the goods;
- the mode of transport to be used by the carrier or the person nominated including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and
- the point where the goods will be receiv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 CPT(Carriage Paid To)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dispatch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B10 통지

■ EXW(공장인도)

매수인은 자신이 합의된 기간 중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FCA(운송인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이름. 이는 매도인이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충분한 기간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
- 운송관련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운송방식 및
-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

■ CPT(운송비지급인도)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dispatch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DAP(Delivered at Place)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DDP(Delivered Duty Paid)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FAS(Free Alongside Ship)

The buyer must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of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e vessel name, loading point and, if any, the selected delivery date within the agreed period.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AP(도착지인도)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PU(도착지양하인도)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DDP(관세지급인도)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FAS(선측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관련 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FOB(Free on Board)

The buyer must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of any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e vessel name, loading point and, if any, the selected delivery date within the agreed period.

■ CFR(Cost and Freight)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shipp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the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shipping the goods and/or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within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 FOB(본선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관련 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CFR(운임포함인도)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